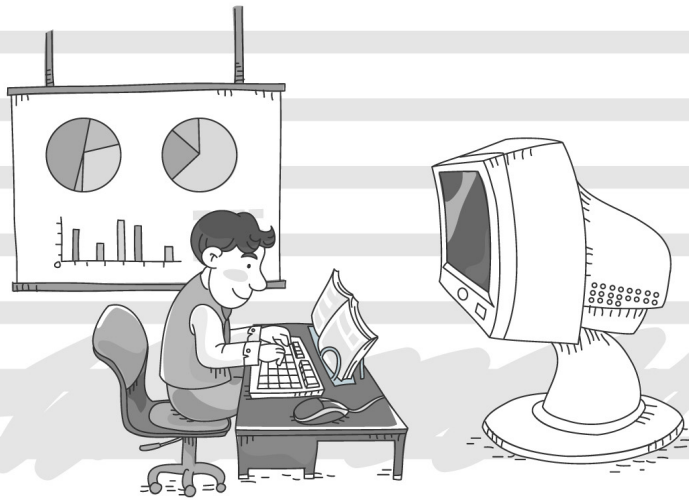


• 기업활동조사 홈페이지  
<http://kostat.go.kr/survey/business>

•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http://esensus.go.kr>

# 2010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조사지침서



S · T · A · T · I · S · T · I · C · S · K · O · R · E · A

# 목 차



##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7
2. 법적근거	7
3. 조사연혁	7
4. 조사기간	7
5. 조사주기	7
6. 조사대상	7
7. 조사항목	8
8. 조사방법	8
9. 결과공표	8
10. 조사체계	9
11. 중점추진사항	9
12. 조사업무 흐름도	10

## 2 현장조사

1. 조사요원의 기본자세	13
2. 조사대상 기업체 명부 보완	14
가. 기업체 명부 출력	14
나. 기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14
다. 흡수합병 기업의 조사방법	16
3. 현장조사 요령	18
가. 면접조사 요령	18
나. 인터넷조사 요령	20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22

# Contents



<http://kostat.go.kr/survey/business>

4. 조사표 작성요령 .....	23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23
나. 출력항목 유의사항 .....	24
다. 경제총조사 관련 조사표 작성원칙 .....	25
라.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	26
마.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	28

## 3

### 내용검토 및 입력

1. 내용검토 .....	48
가. 기본사항 검토 .....	48
나. 연관사항 검토 .....	49
다.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50
2. 입력 .....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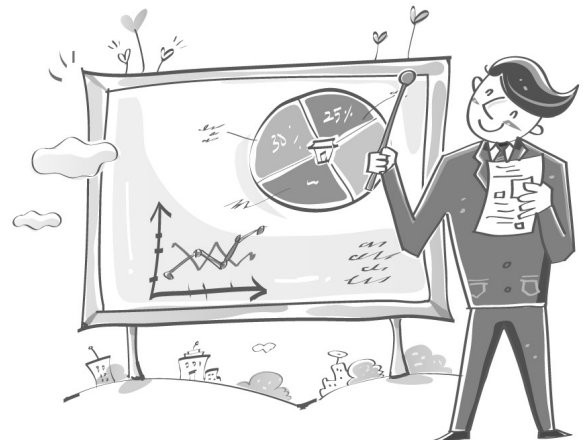
## 부 록

1.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	57
2. 사례별 처리방법 .....	58
3. 조사용어 해설 .....	68
4. 재무제표와 조사항목 대비표 .....	87
5.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 .....	90
※ 조사표(견본) .....	93



#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기간
5. 조사주기
6. 조사대상
7. 조사항목
8. 조사방법
9. 결과공표
10. 조사체계
11. 중점추진사항
12. 조사업무 흐름도





# I 조사개요

## 1 | 조사목적

-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경영실적, 다각화, 계열화, e-비즈니스시스템, 성과관리제도 등)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 및 기업의 경영전략·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연구·분석 자료제공

## 2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제 10166호)

## 3 | 조사연혁

- 2006년 : 제 1회 조사(2005년 기준)
- 2011년 : 제 6회 조사(2010년 기준)

## 4 |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10. 12. 31. 현재
- 조사대상 기간 : 2010. 1. 1. ~ 12. 31. (1년간)
- 조사실시 기간 : 2011. 5. 16. ~ 6. 24.  
\* 인터넷조사 : 2011. 5. 16. ~ 5. 31.

## 5 | 조사주기

- 조사주기 : 연간
- 작성주기 : 연간

## 6 | 조사대상

- 대상산업 : 모든 산업
- 조사대상 :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법인 기업체 12,437개

## 7 | 조사항목

- 기업의 일반사항
  -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업의 창설연도\*, 자본금(출자금)\*, 자본금 중 외국자본비율, 주식시장 상장형태
- 기업 내 조직 및 종사자수
  - 산하 사업체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수
  - 상용근로자 중 외국인 수
- 유·무형자산
  - 유·무형자산 당기취득, 지적소유권 보유 및 활용
- 관계회사(자회사, 관련회사, 모회사) 사항
- 기업 간 거래 및 국외거래(관계회사 거래액, 사업의 외주비, 연구개발비)
- 기업의 경영방향
- 재무구조(자산·부채·자본)\*
- 사업내용(경영실적, 비용내역, 매출액내역)\*
  - \* 창설연도, 자본금(출자금), 재무구조, 사업내용은 행정자료로 대체
    - 조사표 종류
      - 기업활동조사 조사표 I : 임시조사원이 방문조사(인터넷조사 병행)
      - 기업활동조사 조사표 II :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사업실적 부문

## 8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목적, 조사표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작성하는 자기기입식(응답자 기입방식) 조사방법과 인터넷조사를 병행

## 9 | 결과공표

- 잠정결과 공표 : 2011. 11.
- 결과보고서 발간 및 KOSIS 자료 제공 : 2011. 12.



## 10 | 조사체계

통 계 청



지방통계청(사무소)



기 업 체

## 11 | 중점 추진사항

## 1) 인터넷 조사 확대를 통한 응답자 및 조사자의 부담 완화

- 인터넷 조사율 확대(3.8% ⇒ 7.6%)

## 2) 행정자료의 활용

- 기업의 실적자료(재무구조, 경영실적, 비용내역, 매출액 내역 등)는 행정자료로 대체
- 조사표 이원화
  - 방문조사표(조사표 I),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조사표(조사표 II)를 별도 제작
  - 조사원은 조사표 I 만 작성

## 3) 경제총조사와 공동실시

- 1명의 조사원이 기업활동조사, 경제총조사 조사표를 동시에 작성
- 동일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하여 응답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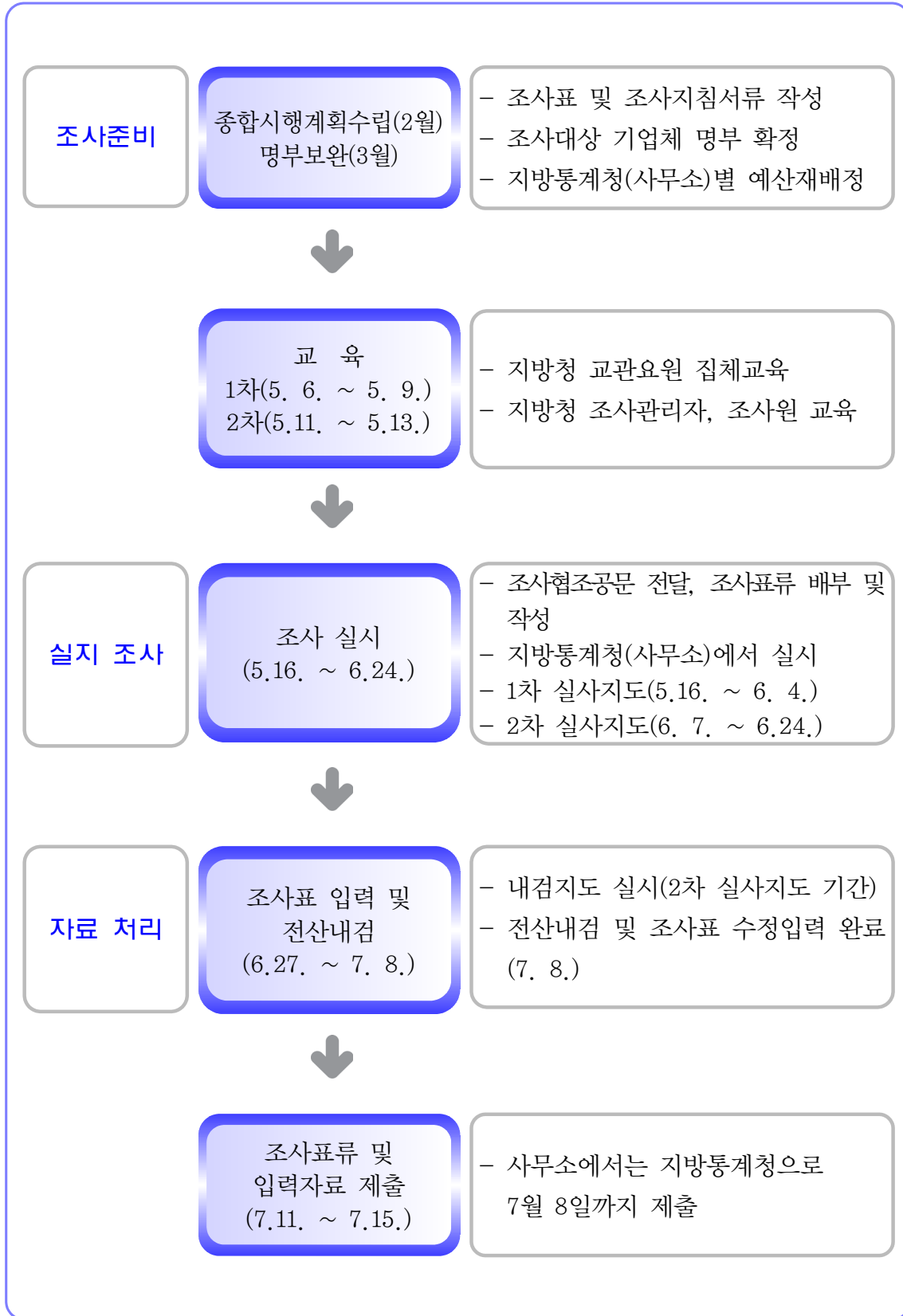
## 4) 조사기간 중 홈페이지 운영

- 전년도 질의 답변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 신규 조사원의 조사착오 방지 요령
- Q&A를 활성화하여 현장조사 시 조사원 질의에 실시간 답변
  -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일유형에 대한 착오 방지
- 인터넷조사 실시를 위한 접속 공간으로 활용



12 | **조사업무 흐름도**

I  
조사  
개  
요



# II 현장조사

1. 조사요원의 기본자세
2. 조사대상 기업체 명부 보완
  - 가. 기업체 명부 출력
  - 나. 기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 다. 흡수합병 기업의 조사방법
3. 현장조사요령
  - 가. 면접조사 요령
  - 나. 인터넷조사 요령
  -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4. 조사표 작성요령
  -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나. 출력항목 유의사항
  - 다. 경제총조사 관련 조사표 작성원칙
  - 라.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 마.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 II 현장조사

### 1 | 조사요원의 기본자세

#### ■ 사고예방

- 조사원은 조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 조사업무 수행 시에는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가급적 낮에 방문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조사를 해야 할 경우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미리 방문 사실을 알린다.
  - 차량을 이용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한다.

#### ■ 교육참석 및 조사지침서 숙지와 성실한 조사

- 조사원은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조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조사업무 수행전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조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 기업체 방문 시에는 조사지침서를 휴대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확인 후 조사에 임해야 한다.

#### ■ 비표본 오차 최소화

- 조사항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 금액의 단위 등 기입 오류에 주의한다.

#### ■ 조사용품 수령 및 관리

- 조사원은 담당공무원 및 조사관리자로부터 다음의 조사용품을 수령 받은 후 조사에 임한다.
- 특히 출력 조사표는 전년도 실적 및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조사표 관리 및 보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 〈 수령할 조사용품 〉

- |                 |                    |
|-----------------|--------------------|
| ● 기업체명부 및 표지    | ● 조사표 기입요령서        |
| ● 출력조사표         | ● 빈 조사표            |
| ● 조사지침서         | ● 산업·국가분류표 및 내검코드표 |
| ● 조사협조공문 및 조사원증 | ● 비밀보호용 봉투         |



**■ 기업체의 비밀·정보 누설금지**

-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체의 정보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 제33조, 제3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 조사대상 기업체 명부 보완**

**가. 기업체 명부 출력**

- 경제총조사대상 명부와 기업활동조사대상 명부에 수록된 지방통계청(사무소)별 조사대상 기업체 명부를 가지고 조사담당자별 업무량 배정
- 조사담당자별 기업체 명부 출력

**나. 기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 명부상의 기업체가 전출되었거나 행정구역 분류부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 관할 지방통계청(사무소) 지역 내인 경우 : 해당 기업체는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고 그대로 조사
- 관할 지방통계청(사무소) 지역 외로 전출되었거나, 명부상의 기업체가 지사 또는 법정본사로 실제본사가 아닌 경우
  - 명부상의 주소지를 통하여 조사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함
  - 실제본사 기능을 하는 사무소 센터 등(본사소재지와 다른 경우만 기입)에 소재지를 기재하여 향후 조사에서는 실제본사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함
- 명부상의 기업체가 폐업된 경우
  -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해당 기업체의 변동부호란에 20을 기입
- 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해당 기업체의 변동부호란에 30을 기입
- 상용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억 미만인 경우
  - 조사대상 업체와 동일하게 조사

〈변동부호〉

조사표 관리부호	변동부호	내 용	비 고	조사 여부
없 음	00. 변동없음	명부상의 기본사항이 변경되지 않고 조사완료된 경우	기업체의 일부내용(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등)이 변경되어 수정, 보완한 기업체도 포함(※일시 휴업중이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포함)	○
	03. 항목불응	일부 조사항목에 불응하는 경우	조사 가능한 항목까지 최대한 조사	○
	04. 조사불응	조사대상 기업체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기업체명, 소재지 등 기본사항 확인	-
1. 조사표 추가	11. 신 규	명부상에는 없는 기업체이나 실재 존재하는 경우	2011. 1 .1이후에 창설된 기업체 - 입력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조사표만 편철하여 제출	○
	12. 누 락	명부상에는 없는 기업체이나 실재 존재하는 경우	2010.12.31이전에 창설되었으나 명부에 없는 기업체 - 입력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조사표만 편철하여 제출	○
2. 조사표 삭제	20. 폐 업	기업체가 폐쇄, 철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전된 주소,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폐업(20)처리	X
	21. 휴 업	휴업으로 조사 불가		X
	22. 이중등재	동일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명부상 중복 등재되어있는 경우	하나의 기업체만 유지(비고란에 이중등재 기업체의 기업체 고유번호 기입)하고 나머지 기업체는 이중등재(22) 처리	○
	23. 흡수합병	다른 기업체에 흡수합병되어 기업체가 없는 경우	흡수 합병한 기업체명, 전화번호 확인 후 비고란에 기입	X
	24. 전 출	해당 장소에 사업체가 없고 관할 지방통계청(사무소)을 벗어난 장소로 이전한 경우	이전된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 하여 비고란에 기입하고 가급적 명부상 주소지에서 조사를 수행	○
3. 조사 대상외	30. 대 상 외	① 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① 대상외(30) 처리	X
		② 상용근로자 또는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동일하게 조사	○



## 다. 흡수합병 기업의 조사방법

- 2010년 중에 흡수합병
  - 흡수합병한 기업(A) : 흡수합병된 기업(B)의 흡수합병전의 실적분을 포함하여 조사
  - 흡수합병된 기업(B) : 기업체 명부 변동부호에 23을 기입하고 조사하지 않음
- 2011년 중에 흡수합병
  - 흡수 합병한 기업(A) : 2010년 기준 이므로 합병전 A기업의 실적을 조사
  - 흡수 합병된 기업(B) : 2010년 기준 이므로 합병전 B기업의 실적을 조사  
(※ B기업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A기업에 B기업분 조사를 요청하여 B기업관할 지역에서 작성 제출)





2010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기업체 명부

시도명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부호	기업체 고유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체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호	빌딩 번호	응답부서 응답자명	전화번호	산업분류 종사자수	산하 사업체수	변동 부호	기업체 일련번호	
1101053	*****	*****	*****	대인건설(주)	종로구 동의	102	0	영병 경리팀	000 02)000-0000	41112	67	3	1	
1101053	*****	*****	*****	판옵피나국제항공(주)	종로구 동의	35	22	국제항공빌딩 회계팀	000 02)000-0000	52391	137	11	2	
1101053	*****	*****	*****	나리검정평가법인(주)	종로구 적선	80	0	적선현대 경리부	000 02)000-0000	68222	405	12	3	
1101053	*****	*****	*****	신찬개발(주)	종로구 적선	80	0	적선현대 경리과	000 02)000-0000	74100	2962	9	4	
1101053	*****	*****	*****	(주)드림씨아이에스	종로구 적선	80		적선현대 재경팀	000 02)000-0000	70113	93	1	21	5
1101053	*****	*****	*****	(주)대진국제교육원	종로구 내자	5		목원 재경팀	000 02)000-0000	75211	63	1	6	
1101053	*****	*****	*****	금신트리피어(주)	종로구 내자	24	3	총무부 총무부	000 02)000-0000	42322	81	2	7	
1101053	*****	*****	*****	대현건설파트(주)	11 내자	25	1	경리부 경리부	000 02)000-0000	72121	423	19	62	

### 3 현장조사 요령

#### 가. 면접조사 요령

##### ■ 조사지역 및 업무량 확인

- 조사원은 현장조사에 앞서 지방통계청(사무소) 담당공무원이나 조사관리자로 부터 조사지역 및 업무량을 배정받는다.
  - 조사 담당기업체에 대한 기업체 명부를 수령한다.
  - 출력조사표상의 기업체와 명부상의 기업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기업체 명부에는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전년도 누락 및 신규기업체 발견 시 명부 하단에 등재하고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때 조사표는 출력조사표가 아닌 새로운 조사표를 사용한다.

##### ■ 조사대상 기업체의 위치 확인

- 조사원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조사 담당기업체에 대한 기업체 명부를 수령한 후 조사대상 기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기업체가 어느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한다.

##### ■ 기업체 방문요령 및 방문시 유의사항

##### ▶ 기업체 방문요령

- 조사원이 기업체를 방문하면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밝힌 후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부서(회계·경리·총무·재경)에 조사협조공문을 접수시킨다.

“저는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 기업활동조사를 하러 나온 조사원 ○○○입니다.”  
“○○부서의 ○○○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느 부서의 누구를 만나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적합한 응답자(총무부나 경리부원등)를 만나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조사표를 작성한다.

- 기업체 응답자와 면담 시 정중한 태도로 조사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되 올바른 언행으로 기업체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한다(불필요한 언쟁 금지).
-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계속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 **기업체 방문 시 유의사항**

- 조사원은 기업체 방문 전 지참해야 할 조사용품이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 조사표, 기업체 명부, 조사표기입요령서, 조사지침서, 조사협조공문, 산업·국가분류 및 내검코드표, 비밀보호용 봉투, 필기구류 등
- 단정한 복장으로 조사원증을 반드시 착용하고 기업체를 방문한다.
- 응답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조사원 연락처를 남기고 오되 추후 전화통화를 하여 응답자와 방문일시를 약속한다.
- 기업체 담당자와 약속한 방문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지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업체 방문 시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 또는 식사시간은 피하여 방문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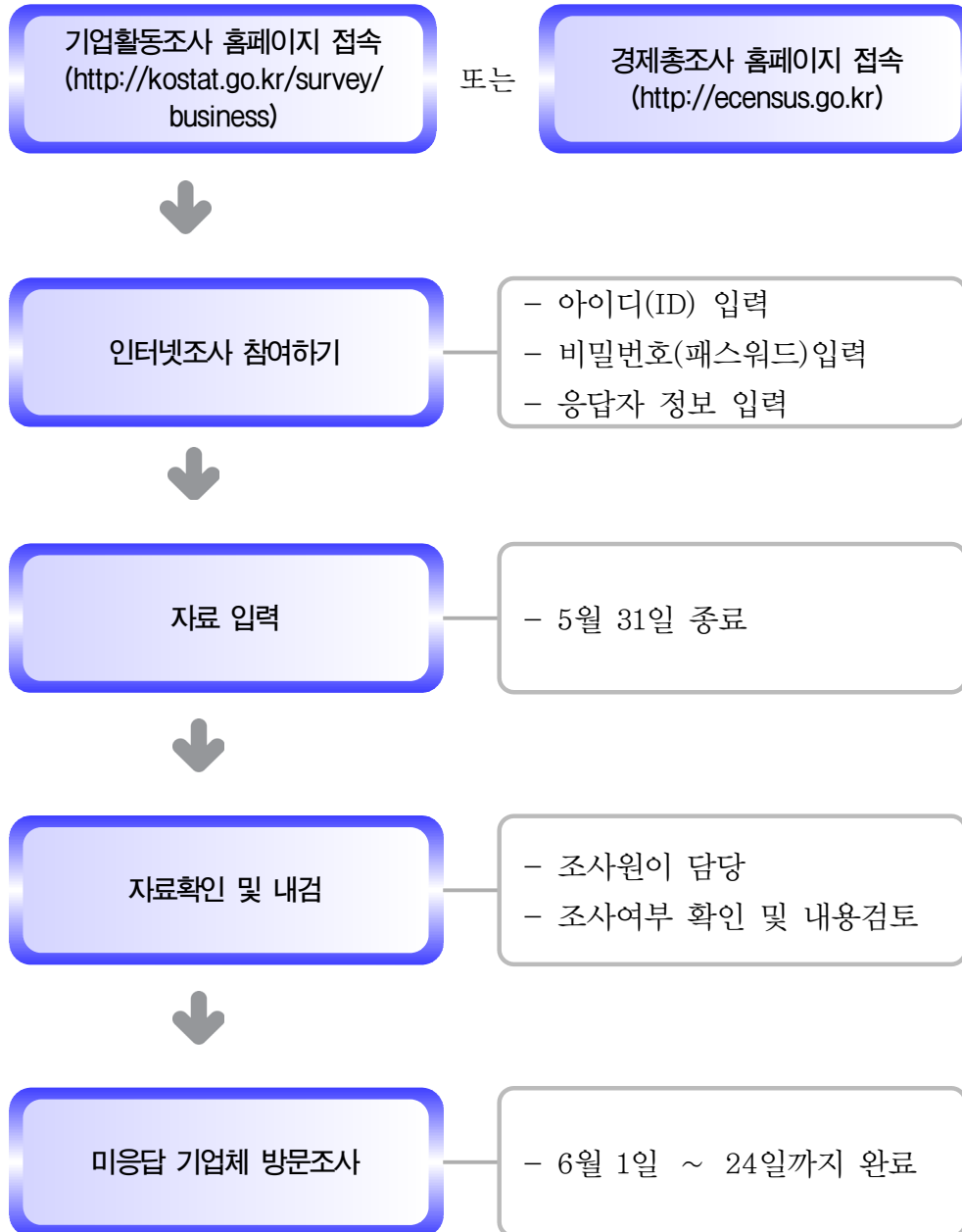
■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 5조(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 현장조사 직원은 면접조사 시 응답자의 응답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3.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4.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5.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 나. 인터넷조사 요령

### 인터넷조사 업무 흐름도



### 1) 홈페이지 접속

- 기업활동조사 홈페이지(<http://kostat.go.kr/survey/business>) 또는 경제총조사 홈페이지(<http://ecensus.go.kr>) 접속
- 「인터넷조사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남

### 2) 인터넷조사 로그인

-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 각 기업별 ID는 조사대상 기업체 명부에 수록되어 있음
  - 조사원은 기업체 ID 및 비밀번호를 조사대상 기업체에 개별통지 해야 함
  - ID, 비밀번호를 분실하였거나 에러가 발생할 경우 콜센터(080-200-2011)로 연락하여 ID 확인, 신규 비밀번호 발급 등 가능

### 3) 자료입력

- 로그인이 완료되면 응답자 정보(응답자 부서, 성명, 연락처 등) 입력 후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며 응답자는 조사항목 순서대로 자료를 입력
- 최초 입력 후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수정하며 인터넷 조사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

### 4) 자료 확인 및 내검

- 조사원은 인터넷 응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조사기일내 조사가 가능 하도록 유도하며 **조사내용을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함
  - 자료 확인은 조사표입력→명부수정 및 조사표 입력→인터넷조사표 보기를 통해 기업체별로 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내용검토가 완료된 인터넷조사표는 인터넷조사표 이관(6. 1. 이후)

### 5) 미응답 기업체 방문조사

- 인터넷조사 종료일(5월 31일)까지 응답하지 않은 기업체는 재방문하여 종이조사표로 조사해야 함

##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 (경영실적, 다각화, 계열화, e-비즈니스시스템, 성과관리제도 등)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 및 기업의 경영전략·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연구·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조사결과 주요 활용기관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각종 경제연구소, 민간기업 등

### ▶ 안하면 안 되나요? 꼭 해야만 하나요?

-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기 어렵고 정부에서는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게 되어 국민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사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실조사 방지를 위하여 통계법에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통계조사에 협조(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요구권 : 통계법 제 25조)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지금은 바빠서 안 됩니다.

- 지금 바쁘시면 조사표 기입요령을 참고하여 ○○일까지 조사표를 작성하여 주시면 그때 다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6조(조사불응 등에의 대처)에 따라 조사팀장 또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불응대상처를 설득하여 조사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설득이 안 되는 경우 지체없이 경제통계기획과로 통보

4 | 조사표 작성요령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이 조사는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 단위의 조사임
  - 개별 사업체가 아닌 기업 전체의 현황을 조사
2. 기입해야 할 금액과 수량이 없는 란은
  - 조사항목 중 일부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 으로 기입
  - 조사항목 전체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전체를 사선(\)처리

예시 1) 사업의 외주비

과 목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관계회사의 비율(%)
①국내외주비				4	6	8	0		5.0
②국외 외주비							0		0

예시 2) 사업의 외주비

과 목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관계회사의 비율(%)
①국내외주비	\								
②국외 외주비	\								

3.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반올림하여 「백만원」 단위로 기입
  -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입
4. 조사대상 기간(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의 실적을 조사
  - 회계연도 기간이 이와 다른 경우 최근 결산기를 기준으로 작성
5. 조사표 상의 ★는 조사원이 부호를 찾아 기입
  - 산업(업종)분류 및 국가분류부호는 별도의 업종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입
6. 조사표는 검정색 볼펜으로 기입하고 조사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색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검정색 볼펜으로 수정

II  
현  
장  
조  
사



## 나. 출력항목 유의사항

### ■ 전년도 자료 출력항목

- 출력된 내용은 전년도 조사결과이므로 금년도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난외사항 중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3**항 1) 자회사, 관련회사 내역이 7개 이상인 기업은 출력내용을 별지로 제공
- **3**항 2) 모회사 유무
- **5**항 기업의 경영방향 중 1) 외부위탁업무분야 2) e-비즈니스시스템 도입여부 8) 성과보상관리제도 적용대상
- 별지가 제공되는 기업의 조사방법
  - 조사원은 별지 출력자료에 변동사항 작성방법을 기입하여 기업에 제공
  - 기업에서는 별지에 변동내역을 보완하고 신규 관계회사를 추가하여 작성

### ■ 전년도 자료 #표시 항목

- 출력된 내용은 전년도에 조사된 항목이므로 금년 조사 시 누락이 없도록 참고 자료로 활용
- **1**항 세부항목별 종사자수
- **2**항 2) 지적소유권 보유 및 활용 건수
- **4**항 1) 매출액 및 구입액의 거래액 중 직접수출액, 직접수입액과  
관계회사 거래액 중 직접수출액, 직접수입액
  - 2) 사업의 외주비
  - 3) 연구개발비



## 다. 경제총조사 관련 조사표 작성원칙

### 1. 기본원칙

- 기업활동조사 유·무형자산 당기취득은 경제총조사 업종별 조사표의 유·무형자산 연간 증가액으로 대체
- 경제총조사에서 유·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조사 조사표의 유·무형자산 당기취득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
- 기업활동조사와 경제총조사 본사조사를 같이 실시하는 기업체의 경우 본사조사표는 별지(지사리스트)만 작성

### 2. 예외사례

#### ▣ 명부상 업체(A)와 실제 존재하는 업체(B)가 다를 경우

- 명부상 업체(A)
  - 기업활동조사는 업체(A)의 폐업, 흡수합병, 진출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부호에 따라 처리하며 유·무형자산 당기취득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표를 작성
  - 경제총조사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음(지사체에서 작성)
- 실제 존재하는 업체(B)
  - 업체(B)가 본사인 경우 기업활동조사의 경우 신규·누락 기업체로 보고 조사
  - 경제총조사의 경우 조직형태, 종사자수, 산업대분류에 따라 경제총조사 작성 조사표를 결정·작성(본사인 경우는 본사조사표도 작성)하여 업체(A) 정보를 업체(B) 정보로 수정하여 시스템에 입력

#### ▣ 대분류 D(35~3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명부상 업체
  - 기업활동조사는 기본원칙에 따라 작성
  - 경제총조사는 본사조사표만 작성
  - 업종별 조사표는 본청에서 작성
- 신규·누락 사업체
  - 기업활동조사는 유·무형자산 당기취득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표 작성
  - 경제총조사는 4인 이하 개인사업체·비법인단체용 빈 조사표를 가지고 창설연도가 2011년인 신규 사업체는 **8** 종사자수까지, 창설연도가 2010년



- 이전인 누락 사업체는 **8**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항목까지 조사  
 - 본사인 경우 경제총조사 본사조사표도 작성

## 라.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 1) 조사대상

-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체

#### 1-1) 회사법인

- 상법에 따라 창설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외국회사(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말함

#### 1-2)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 유급임원을 포함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을 말함

#### 1-3) 자본금 3억원 이상

- 2009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완료 된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말함

### 2) 기업체의 정의

#### 2-1) 기업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1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됨

\* 재무상태표 : 과거의 대차대조표

#### 2-2) 법인형태에 따른 분류

- 회사법인
  - 상법에 따라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창설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외국회사를 말함

- 외국에 본사가 있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지사를 설치한 외국회사도 회사법인에 해당함
-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재단법인, 사단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정부기관(지방자치) 등이 포함됨
  - 【예】 농협, 수협, 한국방송공사, 시·도의 사업소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 【예】 문화단체, 경기후원단체, 후원회 등
- 개인기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체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기업체도 포함

〈기업의 법인분류 및 법률근거〉

← 기업체 →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단체	개인
법인 분류	기업활동조사범위		사단법인 재단법인	농협, 학교, 의료 법인 등	각종 단체 및 후원회	1인이 경영하는 기업 2인 이상이 공동 경영하는 기업
	← →	← →				
법률 근거	상법 (제170조)	상법 (제614~621조)	민법 (제40조, 제43조)	특별법	없음	없음

- 기업활동조사의 기업체
 

기업활동조사는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회사법인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기업체 명부를 작성하고 일정규모 이상(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기업체를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법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II  
현  
장  
조  
사



### 2-3) 사업체의 정의

- 사업체란 “영리, 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를 말함
- ☞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염전, 토사석 채취장 등

### 3) 조사대상 산업범위

#### ■ 모든 산업

-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산업의 기업체를 조사대상 범위로 함

#### 마.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 난외사항

##### 행정구역 분류부호

- 2010. 12. 31. 현재 행정구역 분류부호로 기업체 명부상의 행정구역 분류부호를 기입
- 착오기재인 경우 통계청 홈페이지상 통계분류의 행정구역 분류부호를 참고하여 수정
  - 기업활동조사 홈페이지의 법정동-행정동 연계파일 참조

##### 기업체 일련번호

- 기업체 명부상에 부여되어 있는 해당기업체의 일련번호를 기입
- 신규기업체는 명부하단에 추가로 기입하고 기업체 일련번호는 공란

**기업체 고유번호**

- 대표자나 기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 기존 기업체 고유번호는 유지
  -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명부상 기업체의 폐업, 흡수합병, 진출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하고 현재 기업체는 신규, 누락으로 간주하여 조사

**기업의 일반사항**

① 기업체명	동일전자(주)	② 대표자	오전자
--------	---------	-------	-----

**① 기업체명**

- 기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
  - 영문과 한글을 혼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입  
 ☞ 케이티(주) ⇒ KT(주), 케이씨씨 ⇒ (주)KCC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법인형태는 정식명칭을 기입  
 ☞ (주)동일전자, 동일전자(주), 동일전자(유), 동일전자(합자), 동일전자(합명)

**② 대표자**

- 대표자명을 기입하되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명만 기입

③ 소재지	본사	경기 시·도 시흥 시·군·구 정왕1 읍·면·(법정)동 리 129 번지 8 호 (시화공단 블럭 3나 109 로트)
	실제 본사기능을 하는 사무소, 센터 등 ※ 본사소재지와 다른 경우만 기입	서울 시·도 강남 시·군·구 서초 읍·면·(법정)동 리 25 번지 호 (동일빌딩 블럭 306호 로트)

**③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와 실제 본사 소재지**

- 본사
  -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를 기입
  - 단, 실제 본사기능을 하는 사무소, 센터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두 항목 모두 기입



- 동일 경영의 생산단위인 사업체(공장, 작업장, 광산 등)를 1개 이상 거느리고 산하사업체를 총괄하는 기업체 단위의 관리운영 업무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 실제 본사기능을 하는 사무소, 센터 등
  - 법인등기부상 본사와 실제 본사 소재지가 다른 경우 실제로 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기입
  - 외형상의 명칭(사무소, 출장소 등)과 관계없이 실제로 기업의 총괄적 업무(인사, 회계 등)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장소로 반드시 등록상의 법정본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법정동명과 번지 호수까지 기입하되 아파트식 공장, 복층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층까지 정확하게 기입
  - 빌딩 소재 기업체와 산업단지 내 기업체인 경우 블럭(빌딩명)과 로트(빌딩호)의 세부 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입

<b>4</b> 자본금 중 외국자본비율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1</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5</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td> </tr> </table>	1	5	%	<b>5</b> 주식시장 상장형태	<input type="checkbox"/> 코스피 <input type="checkbox"/> 코스닥 <input type="checkbox"/> 비상장
1	5	%				

#### **4** 자본금

- 외국자본비율은 자본금 중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기입
  - ☞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 협력기구 등을 말함
  - ☞ 최초의 납입자본금이 아닌 2010. 12. 31. 현재 납입 완료된 자본금(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함

#### **5** 주식시장 상장형태

- 2010. 12. 31.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형태에 √ 표시

1) 기업 내 조직 및 종사자수

2010. 12. 31. 현재

구 분		사업체수 (개)	상용근로자(명)			상용근로자 중 외국인 수(명)	
			남	여	계		
① 본사본점 (단독기업)	①-1 본사기능		13	10	23	2	
	현업 부분		①-2 제조 부문	26	10	36	5
	①-3 도·소매 부문		0	0	0	0	
	①-4 기타 부문		0	0	0	0	
	소 계		1	39	20	59	7
② 본사·본점 이외	국내	②-1 제조업	2	180	29	209	27
		②-2 도매 및 소매업	1	15	5	20	3
		②-3 숙박 및 음식점업	0	0	0	0	0
		②-4 건설업	0	0	0	0	0
		②-5 운수업	1	3	0	3	0
		②-6 금융 및 보험업	0	0	0	0	0
		②-7 산하연구소	1	8	4	12	1
		②-8 기타산업	0	0	0	0	0
	국외	②-9 국외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	1	4	1	5	3
	소 계		6	210	39	249	34
합 계(① + ②)		7	249	59	308	41	
③ 임시 및 일용근로자			10	10	20		
④ 기타종사자			7	5	12		

사업체수

① 본사·본점 : 기업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기획, 인사, 경리, 회계** 등의 업무가 있는 장소로서 본사·본점은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체수는 1개로 함

※ 실제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

※ 단독기업 : 하나의 사업체가 하나의 기업을 이루는 경우로 본사·본점 란에 본사기능과 현업부문을 분리하여 조사

①-1 본사기능 : 기획(총무, 조사, 정보처리, 연구개발, 국제사업), 인사, 경리, 회계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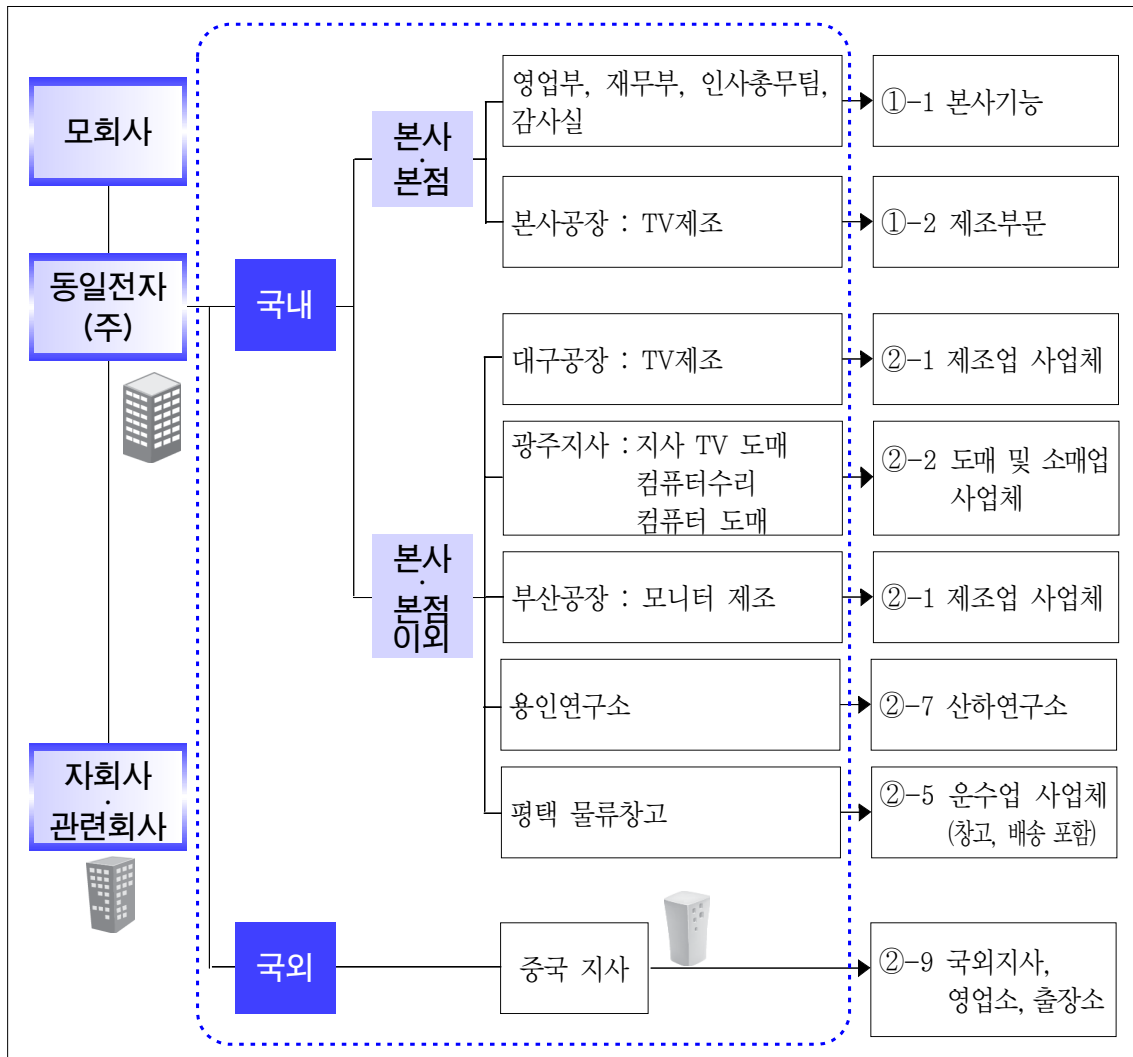
- 현업부문 : 본사·본점과 같은 부지 내에서 사업활동(제조업, 도·소매업 등) 하는 부문을 분리하여 기입
- ①-2 제조부문 : 본사·본점과 같은 부지내의 공장, 제작소 등
  - ①-3 도·소매부문 : 본사·본점과 같은 부지 내에 상품의 판매 등을 행하고 있는 영업소, 지사 등(전자상거래 담당부서 포함)
  - ①-4 기타부문 : 본사·본점과 같은 부지 내에 제조 및 도·소매업 매출 외에 매출이 있는 사업부문(운수업, 건설업, 금융업 등)
- ② 본사·본점이외 : 본사·본점과 **지리적 위치가 다른 장소**에 활동별로 영위 하는 사업체수를 기입
- ②-1 제조업 : 제품의 제조·가공을 하는 사업체(공장, 제작소 등)
  - ②-2 도매 및 소매업 : 영업소, 지사, 별도의 사업 활동을 하는 도매업, 소매업 사업체
  - ②-3 숙박 및 음식점업 : 영업소, 지사, 별도의 사업 활동을 하는 숙박업, 음식점업 사업체
  - ②-4 건설업 : 건설현장의 현장사무소를 관리하는 지사
  - ②-5 운수업 : 운수업 사업체, 자사용 창고, 배송센터
  - ②-6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보험업 사업체
  - ②-7 산하연구소 : 독립된 연구소 또는 본사, 공장의 동일 부지 내에 별도의 건물에 있는 연구소
  - ②-8 기타산업 : 위의 분류 이외(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증기업, 부동산업, 임대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사업체
  - ②-9 국외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 : 국외에 있는 지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 (국외현지자회사, 관련회사 등은 독립된 법인이므로 제외)

### 종사자수

- 조사대상 기업체의 2010. 12. 31. 현재 종사자수를 기입(연말기준)
  - 다만, 건설업체, 스키장, 염전 등 연말 기준으로 하면 지나치게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가 큰 기업체 및 기업체의 산하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월평균 종사자수를 기입
- 월평균 종사자수는 영업한 월의 매월 말 종사자수를 더하여 영업한 월수로 나누어 기입



- 병역특례로 일하는 자는 종사자수(상용근로자)에 포함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결근자,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전투경찰, 무급 비상근임원 등은 종사자수에서 제외
  - 백화점, 건설현장 등에 파견을 나가 있는 근로자는 파견을 보낸 기업의 사업체(부서)의 종사자로 조사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 **조사대상 기업체에서 급여를 지급**
    -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상용근로자임
    - 보수를 받는 유급임원(사장, 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은 포함되나 무급 비상근임원인 경우는 제외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조사대상 기업체에서 급여를 지급**
    - 임시, 일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 기타 종사자
    -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대상 기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기본급 등 일정 급여는 없음**, 일정 급여를 지급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구분)
    -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유흥종사자 등
  - 구분해야할 종사자 형태
    - 다른 기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 **조사대상 기업체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조사대상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기업체 소속 근로자
      - 백화점 내의 특정매입매장에서 일하는 자 등
- ※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소매점 내의 임대매장(갑, 을 형태 포함)은 별도 기업체로 보아 따로 조사함(따라서, 대형소매점 조사 시는 임대매장에서 일하는 자는 제외)

**동일전자(주) 기업 내 조직도**


- 본사 이외 국내 다른 장소 또는 국외에 사업체(지사, 공장 등)가 있는가?
  - 사업체의 활동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사업체수와 근로자수를 기입
  - 동일전자(주)의 경우
    - 대구공장과 부산공장은 제조활동이 주이므로 제조업 사업체수는 2개, 근로자수는 209명
    - 광주지사는 자체 생산한 제품의 도매를 하므로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는 1개, 근로자수는 20명
    - 용인연구소는 연구활동을 하므로 산하연구소 수는 1개, 근로자수는 12명
    - 평택 물류창고는 자체생산 제품과 다른 기업의 상품을 보관하므로 운수업 사업체수는 1개, 근로자수는 3명
    - 중국지사는 국외지사, 영업소 출장소 사업체수는 1개, 근로자수는 5명

- 본사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활동별로 근로자수를 기입
  - 동일전자(주)의 경우
    - 본사에서 제조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제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36명
    - 본사에서 인사, 총무, 경리, 회계, 연구개발 등 본사기능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3명

## 2) 유·무형자산

### 2-1) 유·무형자산 당기취득

2010. 12. 31. 현재

과 목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유형자산 당기취득액					2	9	8	5
①-1 토지						6	6	2
①-2 건물						7	5	2
①-3 구축물						2	4	0
①-4 기계장치						5	6	3
①-5 선박·차량운반구						1	7	4
①-6 기타						5	9	4
①-7 건설중인자산								0
② 무형자산 당기취득액						9	3	6

- 유형자산 당기취득액 : 2010년 중 취득한 유형자산으로 유형자산명세서상의 증가분을 기입
  - ※ 경제총조사 업종별 조사표 상의 유형자산 연간 증가액을 활용
    - 토 지 : 공장, 사무소,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 건 물 : 공장, 사무소, 기숙사, 사택 등 건물 및 승강기, 냉방, 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 구축물 : 펌프시설, 옹벽, 자가발전시설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 토목설비, 공작물 등
    - 기 타 : 공구기구, 집기 비품, 기타 유형자산(부록 73page 참조)
- 무형자산 당기취득액 : 2010년 중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무형자산명세서상의 증가분을 기입
  - ※ 경제총조사 업종별 조사표 상의 무형자산 연간 증가액을 활용

**2-2) 지적소유권 보유 및 활용건수**

2010. 12. 31. 현재

내 용	보유건수	보유 중 활용건수	
		활용 중 자사개발 건수	활용 중 자사개발 건수
① 특허권	30	25	18
② 실용신안권	8	6	5
③ 디자인권	2	2	1
④ 상표권	0	0	0

- 보유 : 자사의 개발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계속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건수
- 보유 중 활용 :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 활용하고 있는 건수(타사에 이전하여 활용하는 것도 포함)
- 활용 중 자사개발 : 활용하고 있는 건수 중 자사에서 개발한 건수

- ※ 특허권 : 독점적으로 발명하여 얻은 권리로 특허법에 따라 등록한 것
- ※ 실용신안권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의 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한 것
- ※ 디자인권(의장권) : 디자인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 상표권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기업이 자체생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상표법에 보호되며 서비스표장,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있음

3) 관계회사(자회사, 관련회사, 모회사) 사항

3-1) 자회사, 관련회사 보유 유무  있음  없음

2010. 12. 31. 현재

일련 번호	① 관계회사명	② 지분율 (%)	③ 국가명 (시도명)	④ ★국가 분류부호			⑤ ★산업분류			⑥ 투자금액(당기말잔액)						⑦ 사업내용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1	C회사	70	대구	0	2	2	2	6	2				5	8	5	TV브라운관 제조
2	D회사	24	서울	0	1	1	4	6	5				2	3	4	컴퓨터 도매
3	홍콩현지법인	100	홍콩	1	3	1	2	6	3			1	5	0	0	컴퓨터모니터 제조
4	미국현지법인	55	미국	3	0	1	2	6	5				8	5	0	TV 제조
5	스페인현지법인	85	스페인	2	1	4	2	6	5		2	3	3	0	0	TV 제조
6																
∴																

- 관계회사
  - 자 회사 : 귀사가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출자금)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
  - 관련회사 : 귀사가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출자금)의 20%를 초과하고 50%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
  - 모 회사 : 귀사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출자금)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
-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자회사와 관련회사에 대하여 회사명, 지분율, 국가(시도)명, 투자금액, 사업내용을 조사
- 국가분류부호 및 산업분류는 산업·국가분류 및 내검코드표를 참조하여 조사표 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
- 출력조사표에 자회사명부가 출력된 기업은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제출
  - 2010년에 변경된 항목은 출력조사표에 “=” 굿고 수정
  - 2010년에 신규로 등록된 자회사는 추가 작성
- 투자금액은 취득원가에 당해 취득분과 처분을 가감한 당기말 잔액



3-2) 모회사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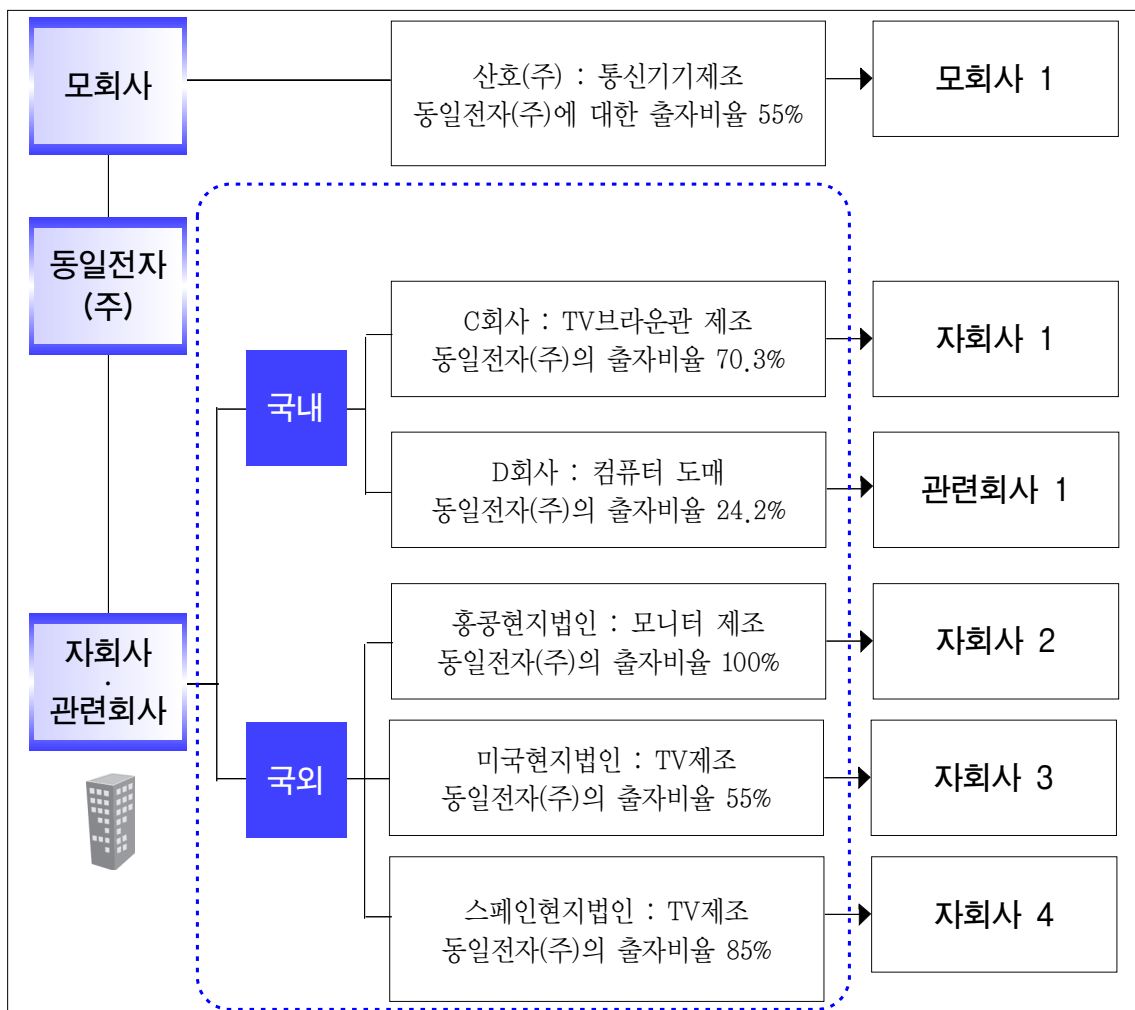
있음    ② 없음

① 귀사에 대한 모회사의 출자비율	<input type="text" value="5"/> <input type="text" value="5"/> %	② 모회사명	산호(주)
③ 모회사 소재지	국가명 또는 시도명 ( 서울 ) ★국가분류부호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1"/>	
④ 모회사 주 사업내용	통신기기제조	★모회사 산업분류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6"/>

3-3) 출자비율, 모회사명, 소재지, 주 사업내용

- 지주회사일 경우 사업내용은 「지주회사」 산업분류는 「71」(금융지주회사의 산업분류는 「64」)
- 사업지주회사는 해당 사업의 산업분류를 기입
  - 사업지주회사 :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 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혼합지주회사' 라고도 함

▣ 동일전자(주)의 관계회사



- 동일전자(주)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 출자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국내 또는 국외 기업을 모두 기입
  - 국내에 자회사 1개, 관련회사 1개와 국외에 자회사 3개가 있음
  - C회사는 TV브라운관을 제조하므로 산업분류는 262(전자부품 제조업)로 분류
  - D회사는 컴퓨터도매를 하므로 산업분류는 465(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로 분류
  - 홍콩 현지법인은 컴퓨터모니터를 제조하므로 산업분류는 263(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으로 분류
  - 미국과 스페인 현지법인은 TV를 제조하므로 산업분류는 265(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로 분류

#### 4) 기업 간 거래 및 국외거래

##### 4-1) 매출액 및 구입액 (국외와의 거래가 없는 경우도 기입)

	거래액							관계회사 거래액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매출액											3	1	0	6	8	
①-1 직접 수출액				2	1	3	5	5				7	2	3	0	
② 구입액				3	0	6	3	4			1	0	3	2	0	
②-1 직접 수입액					8	3	9	0				7	4	5	6	

#### 거래액

- 직접수출액 : 자사명의로 통관수속을 행한 수출액
- 구입액 : 원재료 매입액, 상품 매입액의 합계
- 직접수입액 : 자사명의로 통관수속을 행한 수입액
  - 직접수출액 및 수입액에서 서비스 거래(운송,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정보, 문화 등의 각종 서비스, 특허권 등의 사용료)는 포함 하지 않음

#### 관계회사 거래액

- 거래액 중 관계회사와의 거래액을 기입

**4-2) 사업의 외주비**

과 목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관계회사의 비율 (%)		
① 국내 외주비					2	2	0	7		5	1
② 국외 외주비								0			0

- 외주비 : 「제조원가」, 「공사원가」, 「매출원가」, 「영업원가」 등에 포함된 외주비 총액을 기입
  - 외주용역비와 외주가공비를 지출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을 이용하거나, 설비가 없을 때 외부의 설비를 빌리고 이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 관계회사의 비율 : 외주비 중 관계회사가 점유하는 비율

**4-3) 연구개발비**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관계회사의 비율 (%)					
① 자체 연구개발비					1	7	2	8	/					
② 위탁 연구개발비						1	8	0				1	0	0
③ 수탁 연구비								0						0

- 자체 연구개발비 : 자사의 연구활동에 투입한 연구개발비
  - 인건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연구개발관련 원재료비, 광열비, 소모품비 등
- 위탁 연구개발비 : 사외(국내, 국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위탁비, 부과금)
- 수탁 연구비 : 사외에서 수납한 연구비(보조금, 기부금, 교부금)
- 관계회사의 비율 : 위탁 연구개발비 및 수탁 연구비에 대한 관계회사의 비율

**연구 · 개발**

- 연구 :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조사 및 탐구
- 개발 : 새로운 제품 · 서비스 · 생산방법에 대한 계획, 설계 또는 기존의 제품 등을 현저히 개량하기 위한 계획 혹은 설계로서 연구의 성과, 기타 지식을 구체화하는 것
  - 제조현장에서 행해지는 품질관리 활동과 클레임처리를 위한 활동 혹은 탐사 굴삭 등의 광물자원의 개발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하지 않음



### 5) 기업의 경영방향

1) 귀사가 외부위탁(일부 또는 전부)으로 하는 업무분야는? (해당항목에 모두 √ 표시)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없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생산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정보처리   |
| <input type="checkbox"/> ④ 디자인·제품기획      | <input type="checkbox"/> ⑤ 조사·마케팅        | <input type="checkbox"/> ⑥ 연구개발              |
| <input type="checkbox"/> ⑦ 운송 배송·보관 등 물류 | <input type="checkbox"/> ⑧ 경비·청소·시설 관리   |  |
| <input type="checkbox"/> ⑨ 인사·노무관리       | <input type="checkbox"/> ⑩ 재무·회계·경리·법무   |  |
| <input type="checkbox"/> ⑪ 종사자교육 연수관리    | <input type="checkbox"/> ⑫ 종사자 복리후생      | <input type="checkbox"/> ⑬ 기타 (            ) |

- 외부위탁 : 기업이 핵심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기업경영 방법
  - 상호 복합적이고 의존적이며,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비용절감보다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임시적·단기적·반복적인 컨설팅·외주·하청 등과는 다름
- ② 생산 :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ODM(제조업자 생산설계), EMS(전자제품위탁서비스)포함
- ③ 정보처리 : 시스템 운영과 네트워크 관리,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
- ⑤ 조사·마케팅 : 텔레마케팅, 콜센터, 위탁판매 포함
- ⑨ 인사·노무관리 : BPO(사업프로세스 아웃소싱) 포함

2)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e-비즈니스시스템은? (해당항목에 모두 √ 표시)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없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기업의 자원관리 시스템(ERP)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온라인 교육운영시스템(LMS)    | <input type="checkbox"/> ④ 지식관리 시스템(KMS)                |
| <input type="checkbox"/> ⑤ 인적자원관리시스템(HRMS)                | <input type="checkbox"/> ⑥ 전자입찰시스템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⑦ 고객관리시스템(CRM)        | <input type="checkbox"/> ⑧ 공급망관리시스템(SCM)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⑨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B2BI) |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             |



- e-비즈니스란 :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 서비스, 정보 및 지식의 전달과 교환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경제 활동(인사, 회계 등 개별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는 제외) (부록 79page 참조)

<p>3) 직영점외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 유치여부?</p> <p><input checked="" type="radio"/> 예</p> <p><input type="radio"/> 아니오</p>	<p>3-1) 유치하고 있다면 향후 추진방향은?</p> <p><input type="radio"/> ① 유지   <input type="radio"/> ② 확대</p> <p><input type="radio"/> ③ 축소   <input type="radio"/> ④ 중지</p>
---	--

- 가맹점 유치여부에 ① 예인 경우 3)-1 향후 추진방향이 조사되어야 함
- 프랜차이즈 :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메이커 또는 판매업자가 체인본부를 구성, 독립소매점을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그들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

<p>4) 국외진출(지사, 지점파견, 법인투자)을 하고 있습니까?</p> <p><input type="radio"/> ①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p>	
<p>4-1) 국외진출을 하고 있다면 진출 방식은?(해당항목에 모두 √ 표시)</p> <p><input type="checkbox"/> ① 지사, 지점, 출장소   <input type="checkbox"/> ② 공장</p> <p><input type="checkbox"/> ③ 법인투자   <input type="checkbox"/> ④ 기업이전</p>	<p>4-2) 국외진출을 하지 않고 있다면 향후 진출 계획은?(해당항목에 모두 √ 표시)</p> <p><input type="checkbox"/> ① 계획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지사, 지점, 출장소</p> <p><input type="checkbox"/> ③ 공장   <input type="checkbox"/> ④ 법인투자</p> <p><input type="checkbox"/> ⑤ 기업이전</p>

- 국외진출에 ① 예인 경우 4-1) 진출방식이 조사되어야 함
- 국외진출에 ② 아니오인 경우 4-2) 향후 진출계획이 조사되어야 함

5) 신규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신규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면 어느 분야입니까?

신규진출 사업내용		★산업분류	
1	LCD모니터 사업	2	6
2	BLU(백라이트 유니트) 사업	2	6

- 신규사업진출에 ① 예인 경우 5-1) 신규사업진출 분야가 조사되어야 함
- 신규 생산제품,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산업중분류(2자리)까지 기입
  -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크기의 변동 등은 제외
  -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투자는 제외

6)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7)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면 제휴 형태 및 제휴 대상은?  
 (해당항목에 모두 √ 표시)

7)-1 공동마케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국내주거래기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내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③ 국내이종기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국외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⑤ 국외이종기업
7)-2 공동기술개발	→	<input type="checkbox"/> ① 국내주거래기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내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③ 국내이종기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국외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⑤ 국외이종기업
7)-3 기술제휴	→	<input type="checkbox"/> ① 국내주거래기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내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③ 국내이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④ 국외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⑤ 국외이종기업
7)-4 합작투자	→	<input type="checkbox"/> ① 국내주거래기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내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③ 국내이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④ 국외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⑤ 국외이종기업
7)-5 공동생산	→	<input type="checkbox"/> ① 국내주거래기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내동종기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국내이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④ 국외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⑤ 국외이종기업
7)-6 공동브랜드	→	<input type="checkbox"/> ① 국내주거래기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내동종기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국내이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④ 국외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⑤ 국외이종기업
7)-7 상호주식교환	→	<input type="checkbox"/> ① 국내주거래기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내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③ 국내이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④ 국외동종기업	<input type="checkbox"/> ⑤ 국외이종기업

- 전략적 제휴 : 두 기업이 상호간의 협약을 통해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장기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
- 공동마케팅 :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판매’ 의 전 과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과정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
- 합작투자 : 2개국 이상의 기업·개인·정부기관이 영구적인 기반 아래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경영방식

II  
현  
장  
조  
사



- 공동브랜드 :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제품에 두 개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표기하거나, 시장지위가 확고하지 못한 중소기업체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브랜드
-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 업체들의 브랜드인 ‘썬키스트(Sunkist)’, 국내의 가죽제품브랜드 ‘가파치(CAPACCI)’, 중소기업발업체가 공동개발한 ‘귀족’ 브랜드 등이 이에 해당

8) 아래의 성과보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적용 대상은?

8)-1 스톡옵션제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도입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② 임원	<input type="checkbox"/> ③ 임원 및 간부	<input type="checkbox"/> ④ 일부직원	<input type="checkbox"/> ⑤ 전직원
8)-2 우리사주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도입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② 임원	<input type="checkbox"/> ③ 임원 및 간부	<input type="checkbox"/> ④ 일부직원	<input type="checkbox"/> ⑤ 전직원
8)-3 연봉제	→ <input type="checkbox"/> ① 도입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임원	<input type="checkbox"/> ③ 임원 및 간부	<input type="checkbox"/> ④ 일부직원	<input type="checkbox"/> ⑤ 전직원
8)-4 성과급	→ <input type="checkbox"/> ① 도입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② 임원	<input type="checkbox"/> ③ 임원 및 간부	<input type="checkbox"/> ④ 일부직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⑤ 전직원

- 4개 항목 모두에 대하여 조사되어야 함
- 8)-1 스톡옵션제도 : 법인의 창설과 경영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 8)-2 우리사주제 :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제도
- 8)-3 연봉제 : 근로자의 목표달성도와 직무성과 등을 평가한 기준에 의해 1년간의 임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 8)-4 성과급 : 측정 가능한 직무수행 실적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에 보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제도로서 종사자에게 기본적인 보수를 지급하고 그 위에 그들의 업무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추가적으로 보수를 주는 제도

# III 내용검토 및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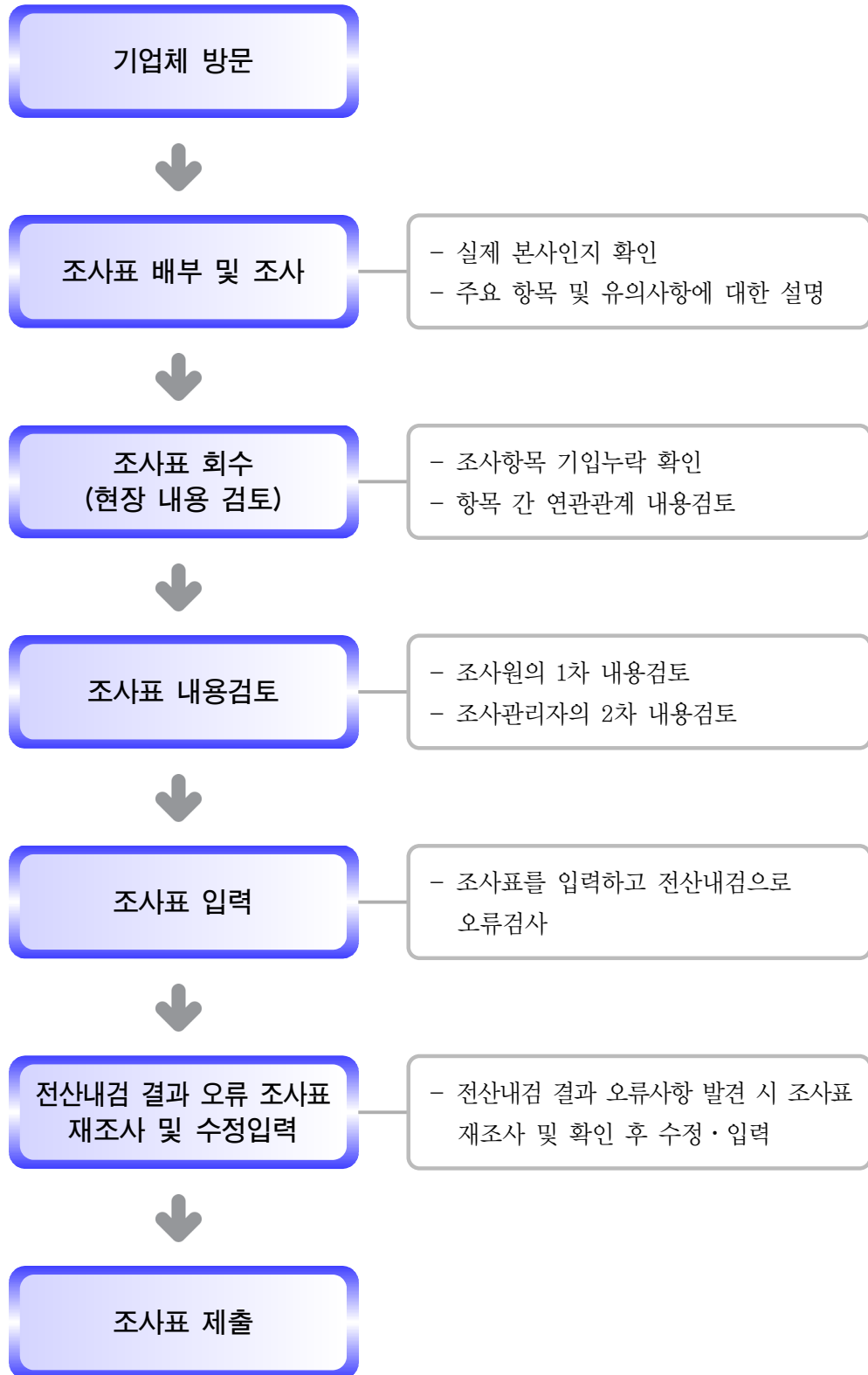
1. 내용검토
  - 가. 기본사항 검토
  - 나. 연관사항 검토
  - 다.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2. 입력





### Ⅲ 내용검토 및 입력

#### 현장조사단계 및 내검 흐름도



**1** 내용검토**가. 기본사항 검토**

- 조사대상 기업체 명부상의 기업체는 빠짐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
- 조사내용이 없는 항목은 기입이 누락되었는지 실적이 없는지 확인
  - 항목 전체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항목 전체를 사선처리
  - 항목 중 일부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0을 기입
- 합계를 기입하는 항목은 합계가 정확한지 확인
  - **1**항 기업 내 조직 및 종사자수의 소계와 합계
  - **2**항 1) 유형자산 당기취득액의 합계
- 상위항목은 세부항목의 합계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
  - **2**항 2) 보유건수  $\geq$  보유 중 활용건수  $\geq$  활용 중 자사개발건수
  - **4**항 1) 직접 수출액  $\geq$  직접 수출액 중 관계회사 거래액
  - **4**항 1) 매출액 중 관계회사 거래액  $\geq$  직접 수출액 중 관계회사 거래액
  - **4**항 1) 구입액  $\geq$  직접 수입액
  - **4**항 1) 구입액  $\geq$  구입액 중 관계회사 거래액
  - **4**항 1) 직접 수입액  $\geq$  직접 수입액 중 관계회사 거래액
  - **4**항 1) 구입액 중 관계회사 거래액  $\geq$  직접 수입액 중 관계회사 거래액
- 주요사업 내용에 의해 산업분류가 적절하게 부여되었는지 확인
  - **3**항 1) 자회사, 관련회사의 산업분류
  - **3**항 3) 모회사의 산업분류
  - **5**항 5) 신규진출 사업의 산업분류



## 나. 연관사항 검토

### • 항목간 연관되는 부분 확인

- 모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자본금 중 외국자본비율이 **3**항 3)의 모회사의 출자비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1**항 사업체수가 있는 경우 상용근로자수는 조사되어야 함
- **1**항 사업체수 합계가 1인 경우 상용근로자수는 본사기능과 현업부문이 조사되어야 함
- **1**항 ②-9 국외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의 사업체가 있거나 **3**항 1)에서 있음에 체크된 경우 **5**항 4) 국외진출에 ① 예에 체크되어야 함
- **3**항 1)에서 있음에 체크된 경우 관계회사 내역이 있어야 함
- **3**항 2)에서 모회사 유무에서 있음에 체크된 경우 3) 모회사명, 출자비율, 소재지, 주 사업내용이 있어야 함
- **4**항 관계회사 거래액(비율)이 있는 경우 **3**항 관계회사 사항이 있어야 함
- **4**항 3)에서 위탁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5**항 1)의 ⑥ 연구개발에 체크가 되어야 함
- **5**항 3)의 ① 예에 체크된 경우 3)-1이 조사되어야 함
- **5**항 4)의 ① 예에 체크된 경우 4)-1이 조사되어야 함
- **5**항 4)의 ② 아니오에 체크된 경우 4)-2가 조사되어야 함
- **5**항 5)의 ① 예에 체크된 경우 5)-1이 조사되어야 함
- **5**항 6)의 ① 예에 체크된 경우 7)이 조사되어야 함
- **5**항 7)-4의 어느 항목에 체크된 경우 ④또는 ⑤에는 체크가 되어야 함
- **5**항 8)의 모든 항목이 조사되어야 함

### • 전년도 실적과 비교되는 부분 확인

- **1**항 기업 내 산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2**항 2) ①특허권의 보유건수, 보유 중 활용건수, 활용 중 자사개발건수  
 ②실용신안권의 보유건수, 보유 중 활용건수, 활용 중 자사개발건수  
 ③디자인권의 보유건수, 보유 중 활용건수, 활용 중 자사개발건수  
 ④상표권의 보유건수, 보유 중 활용건수, 활용 중 자사개발건수
- **3**항 2) 모회사 유무



- **4**항 1) ①매출액 중 관계회사거래액, 직접수출액 및 관계회사거래액, ②구입액 및 관계회사거래액, 직접수입액 및 관계회사 거래액
- **4**항 2) ①국내외주비 및 관계회사비율 ②국외외주비 및 관계회사비율
- **4**항 3) ①자체연구개발비, ②위탁연구개발비 및 관계회사비율 ③수탁연구비 및 관계회사비율
- **5**항 1) 기업의 외부위탁 업무분야  
2)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e-비즈니스 시스템  
8) 기업의 성과보상관리제도

## 다.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1) 조사표 표지

권중 조사표매수		권 매	행정 구역 분류부호(시군구)				
			~				

조사표 작성 대상 기업체수		조사표가 작성 되지 않은 기업체 내역					조사된 기업체수 (C=A-B)
소계 (A)	명부상기업체수 (인터넷조사포함) 실제본사이동	소계 (B)	흡수합병	폐업	대상외	기타	
비고			확 인 자		(인)		

- 조사표 겹표지는 지방통계청(사무소)별로 작성
- 권중 권 : 지방통계청(사무소)별로 조사표 총 매수를 50매 내외로 나누어 편철한 후 그 일련번호를 기입
- 조사표 매수 : 편철된 조사표 매수를 기입
- 실제본사이동 : 타 지역에 소재한 실제 본사에서 조사된 조사표
- 행정구역분류부호 : 편철된 조사표의 첫번째와 마지막 조사표상의 시군구 행정구역분류부호를 기입
- 비고에는 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기업체의 내역을 기재
- 확인자란은 최종 편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 조사된 기업체수 내역에는 ( 권중 권)에서 해당권의 내역만 기입하고 기업체 명부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체수를 기입

## 2) 조사표 편철 및 제출

- 조사표 편철
  - 최종 내검단계를 거친 후, 지방통계청(사무소)별 행정구역번호·기업체 일련번호 순으로 50매 내외로 편철(인터넷조사를 한 경우도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편철)
  - 원가명세서 등 수집된 재무제표는 각각의 개별조사표에 부착하여 편철
- 조사표류 제출
  - 지방통계청(사무소)별 행정구역별로 최종 정리된 조사표류를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로 제출
  - 제출내역 : 편철 조사표, 수집된 재무제표, 건의사항



## 2 | 입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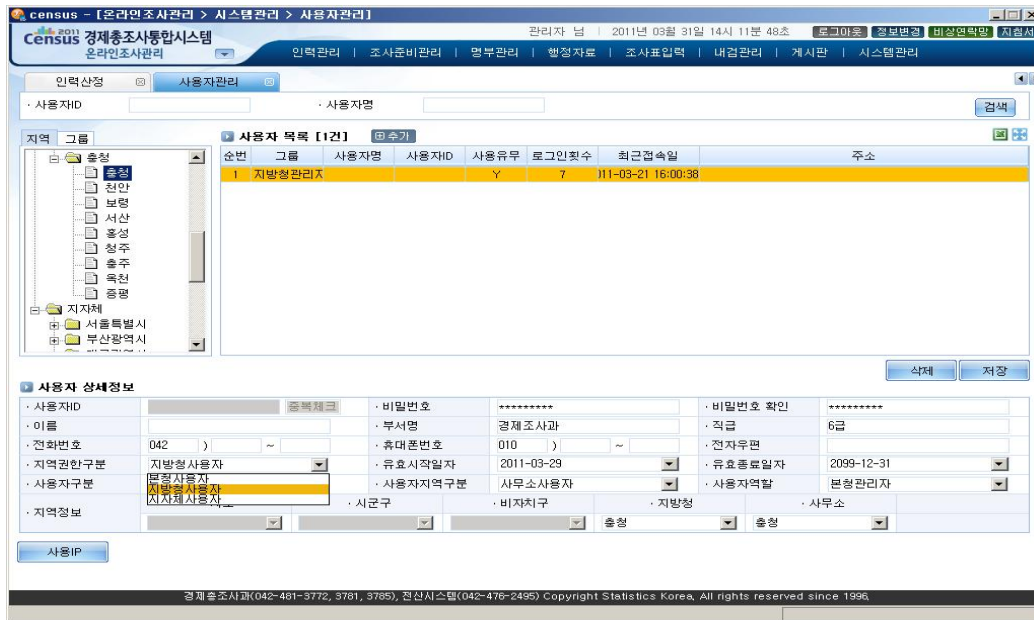
### ■ 입력에 관한 일반사항

- 조사대상 기업체별 담당자 지정 등 현장조사관리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운영 (<http://eco.ecensus.go.kr>)

### ■ 조사원 등록 요령



- 모든 입력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ID 생성
  - □ + □□□□□ + □□□
  - ↓ 지자체/지방청 일련번호
  - 사용자구분(n: 통계청(본청), o: 지방청, b: 지방사무소, c: 시도, s: 시군구)
  - 예) 경인지방통계청 사용자: o11000001
- 조사요원 ID, 비밀번호는 담당공무원이 채용승인을 하면 자동으로 생성
  - 담당공무원은 조사요원 ID, 비밀번호를 조사요원들에게 전달
  - 처음 접속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
- 사용자 생성 시 부여 받은 권한지역만 보임



- 조직도에서 선택한 지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사용자의 권한지역이 된다.
- 채용구분 “1. 총관리자, 2. 조사관리자, 3. 조사원, 4. 예비조사원, 5. 시도 조사지원관리자, 6. 시군구 조사지원관리자” 중 하나로 선택한 후 조사원 추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입력시스템 사용자로 등록됨(처음 입력시스템 접속 시 열리는 사용자 정보 변경 창에서 비밀번호 등을 수정한 후 입력시스템 사용)

■ 기업체별 조사원 배정요령



[조사원배정 화면 구성]



- 작업자 배정의 “검색조건” 으로 검색을 하여 “기업체리스트” 에 검색된 기업체가 나타나면 각 기업체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하거나, 선택 범위를 지정 후 선택/해제, 또는 검색된 모든 기업체들에 대한 전체선택/해제 후, 배정을 하면 기업체에 조사원ID가 입력됨

#### ■ 명부 출력

- 조사대상기업체의 명부는 주관기관별, 조사별, 해당지역의 조사원별 출력

#### ■ 지방청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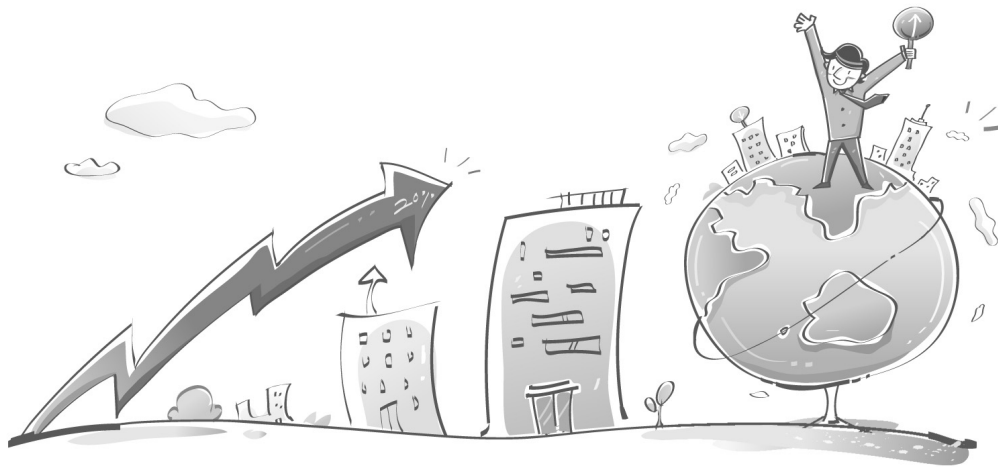
- 조사 준비 단계
  - 지방청 자체 실시 계획수립
    - 교육, 실사지도, 조사표 내검, 조사표입력 및 전산내검 계획 등
  - 조사표류, 조사용품 관리(부족분 현황 파악 등)
- 조사 단계
  - 해당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점 해결 및 조사 진행상황 확인
    - 조사 조기착수 및 조사기일 내 조사 완료
  - 조사표 내검실태, 조사표 입력 진척상황, 착오조사표 처리 및 수정·보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 내검 및 조사표 제출 단계
  - 지방청별로 입력된 자료의 전산내검 및 종합내검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착오조사표로 나타난 경우 착오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를 50매 내외로 편철하고 각종 조사표류를 경제통계 기획과에 제출

---

# 부 록

---

1. 지침서 주요 개정 내용
  2. 사례별 처리방법
  3. 조사용어 해설
  4. 재무제표와 조사항목 대비표
  5.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
- ※ 조사표(견본)







# 부 록

## 1. 지침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2009년 기준	2010년 기준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연간조사(10종) 통합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이 방문조사</li> </ul> </li> <li>• 경상조사업체에 관한 모든 연간 조사는 경상조사 담당자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광업·제조업조사 제외 (지자체의 임시조사원이 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총조사와 동시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이 방문조사</li> </ul> </li> <li>• 경상조사업체도 임시조사원이 수행</li> </ul>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성별(남, 여) 구분 조사 (통계법 시행령 25조 4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성별은 행정자료로 대체</li> <li>- 검토 및 보완자료로 대표자명만 조사</li> </ul> </li> <li>• 주식시장 상장형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으로 구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내 조직 및 종사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 다른 기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내 조직 및 종사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기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항목 삭제</li> <li>- 상용근로자 중 외국인 수 추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무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구축물 당기취득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무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당기취득액</li> <li>- 구축물 당기취득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경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국외 진출 방식 지점, 공장, 출장소</li> <li>-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추진여부</li> <li>- 전략적 제휴 추진 대상</li> <li>- 전략적 제휴 추진 방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경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국외 진출방식 추가</li> <li>- 향후 국외 진출 방식 지사, 지점, 출장소와 공장을 구분</li> <li>-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지 여부</li> <li>- 전략적 제휴 형태 및 제휴 대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부채·자본</li> </ul> </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실적, 비용내역, 매출액내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구조, 사업내용은 행정자료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내역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로 통합</li> <li>- 정보처리통신비, 포장운반비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통합</li> </ul> </li> </ul>

## 2. 사례별 처리방법

### 조사표 작성 부문

#### ▣ 기본사항

- 결산기가 변동(예-결산기가 3월에서 12월로 변경된 경우)되어 일부 중복되는 부분 포함 여부?

☞ 12월 결산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함

- 조사대상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일부 기업이 4월 1일~3월 31일까지 결산된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 주려고 할 경우 처리방법은?

☞ 기업활동조사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결산기준월이 3월, 6월 등 회계연도 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최근 결산기를 기준으로 작성함

#### ▣ 1항 기업 내 조직 및 종사자수

-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 지급 받는 보험설계사의 종사자수 포함 여부?

☞ 보험설계사는 급여를 받지 않고 실적 수당을 받으므로 기타종사자에 해당함

- 학습지 선생님의 종사자수 포함 여부?

☞ 고용한 기업에서 고용계약 방법에 따라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로 구분하여 조사함

● 건설업체의 일용노무자 중 몇 년간 계속 근무할 경우의 종사상 지위는?

- ☞ 근무기간 계약을 하지 않고 일급을 받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포함됨

● 건설현장 사무소는 조사대상이 아닌데 건설현장에 파견된 정규 직원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 ☞ 건설업체는 본사, 지사 또는 영업소에서 건설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조사 시 건설현장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함

● 본사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에는 결정권 있는 임원진과 관리직 몇 명만 있고 회계 등 핵심 관리팀은 별도의 다른 곳에 있을 경우 본사는 어느 곳인지?

- ☞ 조사를 할 수 있는 실제 본사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법정본사와 실제 본사를 각각 기입

● 항공회사의 경우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국외에 사무실을 두고 소수의 인원이 잠시 머무르고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 ☞ 국외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체로 보아 국외 사업체 및 상용근로자수에 포함됨

● 제조업이지만 자사 내 제조공장이 없고 전부 아웃소싱하는 경우는 본사기능과 현업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 ☞ 제품을 전부 아웃소싱 한다 하더라도 제조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는 있으므로 분리하여 조사하고 종사자가 적은 이유는 비고란에 기입함



● 지입차 47대를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지입차 차주를 상용근로자수로 구분해야 하는지?

☞ 지입차 기사는 급여를 받지 않고 실적 수당을 받으므로 기타종사자에 포함

● 기업 내 종사자수 중 국외자회사의 주재원인 경우 상용근로자 포함 여부?

☞ 본사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상용근로자에 포함됨

● ○○건설과 같이 대규모 건설업체로 현장사무소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사업체로 조사하지 않는지?

☞ 건설업체의 현장사무소는 본사, 지사, 영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이 아님(현장사무소의 정규직의 급여 또는 인력관리는 인근 지사, 영업소 또는 본사에서 관리)

● 주택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인데 본사에는 근로자가 11명이고 각 사업장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가 1,000여명 정도이고 임금은 파견되어 있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기업체의 본사에서는 임금을 파악하지 못함), 해당 기업체에서는 4대 보험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재무제표에는 본사 인원에 대한 비용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파견된 근로자들을 해당 기업체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기업체의 본사에서 4대 보험을 지불하고 있는 점, 주택관리서비스업의 특성상 근로자는 본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업무상 지시, 근무시간 등의 통제를 본사에서 하고 있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업체의 본사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1항 기업 내 조직 및 종사자수 작성에 관해서 본사와는 별도로 공장이나 기타 사업체에 인사 경리 회계 부서가 존재할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즉, 제품의 제조/가공을 하는 사업체 안에 제조, 경리, 조달(구매), 인사, 영업 등 여러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조업 사업체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일이 나눠서 제조/연구소/운수업 등으로 기입해야 하는지?

☞ 이 경우는 법정본사와는 별도로 실제본사가 있는 경우이므로 실제 본사 기능을 하는 곳과 제조 등을 하는 사업체가 같은 부지 내에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부지 내에 있다면 ①번 본사본점 란에 나누어 기입하고 같은 부지가 아니라면 ①번과 ②번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분리하여 기입함

- 택배 회사인데, 본사근로자가 60명이며 전국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지점을 내고 택배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국 지점을 사업체수로 보아야 하는지, 또 각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들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택배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를 기입해야 하지만 개인이 지점을 내고 운영하는 지점 및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 골프장운영업의 경우 본사이외 골프장에 식당과 골프용품 매장이 따로 있을 경우 사업체수 몇 개 인지?

☞ 사업체 정의는 장소에 의해 구분하고 있으나 같은 건물에 있다하더라도 식당과 골프용품매장이 별도로 장부를 갖고 있을 경우는 각기 다른 사업체로 분류함



## ▣ 2항 유·무형자산

● 타 회사를 합병한 경우에는 유·무형자산 취득금액이 많은데 합병된 회사의 자산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합병된 회사 자산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유·무형자산 당기취득액이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타 회사 합병유무를 확인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비교란에 기입

● 무형자산에 국고보조금이 있으면 모두 연구개발비 중 수탁연구비에 기입 하는지?

☞ 연구개발비 중 수탁연구비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수탁연구를 한 경우로 결산서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기입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국고 보조금은 모두 수탁연구비가 아니고 무형자산 내 개발비중 보조금을 말함

● 무형자산 당기취득액 중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국고보조금은 무형자산 당기취득액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전체 무형자산 당기취득금액을 그대로 작성함

● 지적소유권은 특허출원중인 것도 보유로 포함하는지? 보유건수에 등록건수를 기입해도 되는지?

☞ 특허출원중인 것은 포함하지 않음.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등록료를 지불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됨  
보유의 개념은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보유와 등록은 동일한 개념이 아님

● 특허권 중 국제특허의 보유건수 포함 여부?

- ☞ 세계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특허가 등록된 그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외국에만 특허등록을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특허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특허권 보유건수에 포함하지 않음

■ 3항 관계회사 사항

● 기업 상호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도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는지?

- ☞ 자회사, 모회사는 상호출자와 관계없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성립됨

● 관계회사 유가증권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지분율 산출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 ☞ 일반적으로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보통주 지분율을 관계회사 지분율로 봄

● 관계회사 투자금액을 기업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 ☞ 장부가액, 순자산가액, 재무상태표가액, 기말잔액 등이 있음

● 관계회사가 없는 기업인데 결산서에 관계회사 거래액이 있으면 조사표에 기입해야 하는지?

- ☞ 관계회사가 있는 기업만 기입하나 관계회사를 자회사만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회사는 없는지 재확인 한 후 작성함



### ▣ 4항 기업 간 거래 및 국외거래

● 기업 간 거래 및 국외거래의 직접수출액이 조사표에는 '0' 으로 조사되었는데 손익계산서 상에는 수출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

☞ 손익계산서상의 수출액은 직접수출액일 뿐만아니라 기업의 모든 수출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상의 수출액이 반드시 직접 수출액이라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기업에 직접수출액 비중을 문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수출액을 보완하여 작성함

●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주는 도급비, 위탁가공비 등이 외주비에 포함되는지?

☞ 도급비는 외주용역비로 제조업체나 건설사의 경우 외부에 하도급을 주어 자사 제품의 일정 부분의 공정을 맡기고 지급하는 경비이고, 위탁가공비는 하청공장 등의 외부생산자에게 재료나 반제품을 공급하여 생산 및 가공을 위해 지급하는 대가로 모두 외주비에 포함됨

● 5항 기업의 경영방향 중 1) 외부위탁분야의 연구개발이 있으면 4항 연구개발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 4항 연구개발비의 위탁연구개발비가 있어야 함

● 산하연구소에 사업체수가 기입되면 무조건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하는지? 반대로 연구개발비가 있으면 무조건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지?

☞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개발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 연구개발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구소가 있는 것은 아님. 연구소가 없다하더라도 본사 등에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연구소 신설 준비단계에서도 연구개발비가 발생할 수 있음



## ▣ 5항 기업의 경영방향

- 금융기업의 결산서에서 경비, 급여 관리, 전산개발팀을 결산 서류에 위탁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 외부위탁이 맞는지?

☞ 경비, 급여 관리, 전산개발팀 등은 기업에서 외부위탁으로 처리하는 분야로 5항의 외부위탁 분야를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로 각각 기입함

- 해운 항공사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지점, 지사는 없으나 국외로 진출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도 국외진출로 보는지?

☞ 기업활동조사에서 국외진출의 범위는 지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진출하거나 국외 법인에 대한 투자활동, 기업의 이전으로 보고 있으므로 단순히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국외진출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조사표 5항의 1) 외부위탁으로 하는 업무분야

1. 업체에서는 회계장부만 작성한다고 하면 10번 항목에 해당되는지?
2.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업체는 회계법인에서 작성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모두 10번 항목에 해당되는지?

☞ 외부위탁이란 기업이 핵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업무를 장기적으로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수행의 의미는 회계장부작성을 의미하므로 첫번째 경우는 회계장부작성을 하기 때문에 10번(재무, 회계, 경리, 법무)에 해당되지만 두번째 경우는 회계법인에서 작성되어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것이 아니고 재무팀에서 작성하여 회계법인에서는 감사만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계업무의 외부위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 기타사항(인터넷조사 및 입력시스템)

● 인터넷조사 시 기업체에서 로그인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을 재확인해야 하는지?

☞ 조사원이 ID와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준 경우가 가장 많으니 조사원에게 ID와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안 되는 경우에는 콜센터(080-200-2011)로 문의

● 신규기업체의 명부 수정에 관련하여 신규기업체는 기업체 일련번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신규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체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입력 및 내검기간 중 문의사항

- 2011년에 흡수합병을 한 경우와 흡수합병 된 경우는 어떻게 조사하며 변동부호는 어떻게 부여 하는지?

☞ 금년도 조사는 2010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2011년에 흡수합병을 한 기업과 흡수합병 된 기업은 모두 각각 조사를 해야 하며 흡수합병 된 기업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흡수합병 한 기업에 의뢰하여 별도로 작성  
또한 각각 조사가 된 경우 변동 부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흡수합병 된 기업이 조사가 안된 경우 변동 부호를 23으로 부여함

- 조사표 비고란에 특이사항이나 폐업 사유를 입력 하려 하는데 계속적인 에러코드가 발생합니다.(Error Code 50077)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문의하신 에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러코드가 아니고 그냥 순수에러입니다. 에러를 없애는 방안으로는 ‘콤마(,)’ 등 특수문자를 제거하시고 입력함

- 실제 본사 이동이나 주소 변경 등의 경우 조사표상에서 행정구역 분류부호와 주소를 변경하면 제대로 변경이 되지만 명부조회를 해보면 변경이 되어 있지 않고 새로이 입력(변경)하는 곳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조사표만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명부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명부는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

☞ 명부의 수정과 변경은 불가능하며 단지 최초 명부만을 조회할 수 있음  
- 조사표만 변경하고 명부의 수정은 추후 입력된 조사표 내용을 기준으로 본청에서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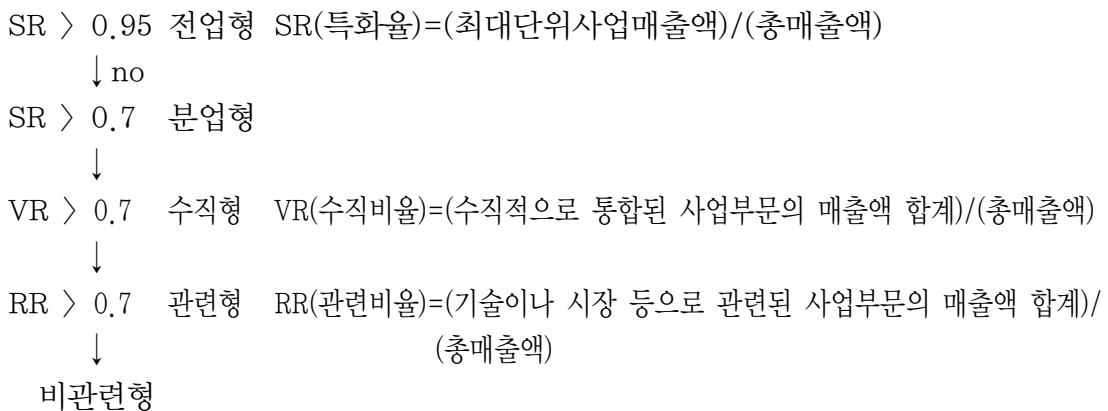
### 3. 조사용어 해설

#### 기업의 다각화

##### 1) 다각화의 정의

- 다각화란 기존의 시장이나 제품과 무관한 분야, 즉 다양한 산업 혹은 사업으로의 기업의 진출을 의미
- 기업의 다각화는 환경변화와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위험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기업의 안정성 확보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며 이익을 증대하기 위함

##### 2) 다각화의 유형



##### 3) 한국기업집단의 다각화 유형

- 한국기업의 특징은 고도다각화로 그중에서도 비관련다각화에 해당 (1991년 기준)

	전업형	분업형	수직형	관련형	비관련형
1-10위			선정, 기아	한진	삼성, 현대, LG 등 7개 그룹
11-30위		동아건설, 삼미	고합, 풍산	태광산업, 해태 등 8개 그룹	두산, 한화 등 8개 그룹
31-50위		범양상선, 극동정유, 동원산업	우성 건설, 아남	동국무역, 영풍 등 5개 그룹	삼양사, 동양 등 8개 그룹

## 기업의 계열화

### 1) 계열화의 정의

- 기업의 계열화
  - 일반적으로 일상적 거래관계를 넘어선 강력한 기업 간의 관계를 총칭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열에는 자금, 기술, 설비 등을 원조하는 대기업과 이에 대해서 계속적 공급관계를 가지는 관계회사 사이에 형성
  - 기업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과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 공정한 국민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불리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과도한 기업집중의 폐단을 규제

### 2) 계열화의 유형

#### ① 수직적 계열화

- 다른 종류의 생산단계에 종사하는 각 기업을 수직적으로 집단화 한 것
  - 후방계열화 : 생산기업이 원료단계를 계열화 한 것
  - 전방계열화 : 생산기업이 판매기업과 통합하는 것

#### ② 수평적 계열화

- 동일한 생산단계에 종사하는 각 기업을 집단화하는 경우
  - 특정의 자동차 생산업체가 같은 단계에 있는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를 계열화

#### ③ 분기적 계열화

- 같은 공정 또는 같은 원료에서 이중 제품공정이 분기화(ramification)되는 기술적 조직과 관련을 갖는 계열화(화학공업)

#### ④ 복합적 계열화

- 다른 종류의 원료, 부품, 이중공정으로부터 동일한 제품계열 또는 동일 시장 계열에 집약화하는 기술적인 조직과 관련을 갖는 계열화
  - 전기메이커가 다수의 부품메이커를 산하에 계열화하는 경우나 또는 전기냉장고, 전기청소기를 각각 생산하고 있는 기업을 계열화하여 가전제품이라는 동일한 시장분야를 충실화하는 경우

## ⑤ 시행적 계열화

- 특정제조업체의 생산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을 계열화하거나 혹은 보조적 서비스를 행하는 기업을 계열화
  - 원양수산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이 통조림회사와 냉동회사 등을 집단화하는 경우

## 관계회사

### 1) 모회사·자회사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한 회사가 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회사를 모회사라고 한다. 지배와 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전자를 지배회사라고 하고 후자를 종속회사라 하며 지배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종속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모회사는 자본참가라든가 의결권의 다수 또는 각종 계약에 의하여 자회사를 지배하게 되며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나 경제적으로는 일체가 됨

### 2) 관련회사

- 위와 같이 주식투자에 의한 자본참여 등을 통하여 출자회사가 출자한 자회사를 소유·지배하여 계열화하고 있는 경우와 계열사는 아니더라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를 초과하고 50% 이하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관련회사라고 함.

### 3) 지주회사

-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창설된 회사, 즉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를 말함
- 지주회사에는 자회사의 지분이나 출자관리만을 맡는 ‘순수지주회사’와 자회사들과 연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있음
  - 사업지주회사 :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 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혼합지주회사’라고도 함

#### 4)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보유를 통해 금융기관(은행, 비은행-증권, 보험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를 의미함
-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는 지주회사 본체가 금융업무를 직접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됨
- 순수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와 달리 지주회사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 시티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들이 주로 순수지주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유니버설뱅크 형태인 유럽은행들은 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자회사를 거느리는 사업지주회사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관계회사 유가증권

- 관계회사 유가증권이란 지배 또는 유리한 거래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 회사의 유가증권을 말하며 성질상 장기적으로 소유되는 것이며 기말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하고 있으나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자회사 보유기업
  - 모회사가 독립된 자회사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독립된 다른 자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 특히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 중 해당부분에 대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 지분법 적용에 의한 회계처리
  - 자회사의 실적을 보유 지분율만큼 자기회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기말의 평가를 처음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나 주식취득일 이후 자회사의 손익발생, 배당금 지급 등에 의한 투자법인의 지분변동을 투자계정에 반영하여 정기적(보통 결산기)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라 함



예)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을 때 B기업의 당기순이익이 100 억원이라면 이중 출자분 25%에 해당하는 25억원은 A기업의 순이익에 추가 된다. 25억원을 지분법평가이익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계열회사의 경영성과를 모회사의 경영성과에 반영함으로써 모회사의 실질적인 경영내용을 알 수 있으며 계열사가 좋은 실적을 올릴수록 모회사에 유리해지며 자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엔 모회사 실적에서 차감 하게 됨

## 2) 매도가능증권

-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투자자산에 분류되어 관계회사의 유가증권과 같이 투자유가증권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음
- 관계회사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자산이 70억 미만의 기업은 지분법 적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매도가능증권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 보통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지분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출자법인의 경영 손실이 크거나 청산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 따라 청산될 때까지 매도가능증권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법인명 또는 종목명	출자 목적	기초잔액			증가(감소) 내역		기말잔액			피출자법인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손실)	비 고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수량	취득 (처분) 가액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국내	매도가능증권												
국외	매도가능증권												



## 유·무형 자산

## 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냉난방, 전기, 통신시설 등 포함),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기타자산(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등으로 구분 한다.

- ① 토지 :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 ② 건물 :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주위를 기둥으로 구성하고 격벽, 지붕으로 외계와 단절된 구성물로 사람의 거주 및 사용, 물건의 저장, 제조 또는 작업장 등의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 본체
  - 공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 냉방, 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 ③ 구축물 : 토지에 정착하여 시설된 일체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로 교통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교통시설과 발전 및 송배전시설, 수해의 방지와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비된 수리·치수 및 급수시설
  -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조선대, 궤도 등
- ④ 기계장치 : 기계는 동력을 받아서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설비이며, 장치는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것을 변질, 변형, 분해, 운동시키는 설비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요(窯), 로(爐) 등 포함
- ⑤ 선박·차량운반구 : 해상운반구(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 육상운반구(자동차, 철도차량 등), 항공기·헬리콥터 등
- ⑥ 기타(공구, 비품 등) : 공구와 기구란 주로 기계 또는 장치에 부착시키거나, 공장의 현장작업에 손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공구)과 주로 그 자신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장의 현장작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기구)
  -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
- ⑦ 건설중인 자산 : 업무용 유형자산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시 처리하는 계정



〈업종별 기계장치 내역〉

산업 대분류	구조 또는 용도
농업	원동기, 경운정지용, 이앙 및 수확조제, 시비파종, 양수 및 이앙, 방제 및 제초, 운반, 농산가공, 가축사육관리용 기계 해조류, 패류, 어류, 육상양식 설비
광업	석탄광업설비
	금속광업설비
	유황광업설비, 기타비금속광업설비
전기·가스·증기업	수력, 화력, 내연력 변전, 발전설비
건설업	불도자, 측량의 건설공사 기타건설공사설비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가솔린, 석유 또는 액화가스주입 설비
	요리점, 호텔, 여관업용 및 급식용설비
운수업	강삭철도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인쇄시설, 영상장비, 조명장비, 전신전화, 통신사의 통신설비, 기타통신설비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장비, 의학연구장비
사업시설, 사업지원 서비스업	측량업용, 광고물설치장비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연극, 유원지의 유희 제작설비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화장, 오수처리, 매연처리 설비
	클리닝, 공중목욕탕, 사진현상소 설비

■ 유형자산명세서

(단위 : 백만원)

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비고
토지	6,270	-	-	6,270	-	6,270	
건물	9,773	-	-	9,773	1,123	8,650	
구축물	2,562	-	-	2,562	1,044	1,518	
기계장치	31,456	275	-	31,731	18,018	13,713	
차량운반구	177	65	67	175	119	56	
공구기구	143	-	-	143	137	6	
집기비품	485	14	-	499	415	84	
합계	50,866	354	67	51,153	20,856	30,297	

부  
록

## 2) 무형자산

- 무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적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

### ①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말한다.

### ② 영업권

-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리는 것을 말한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자원, 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 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A group of unidentifiable values)라고 표현할 수 있다.

### ③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기입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생산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기입한다.

### ④ 기타

- 차지권, 창업비, 기타 무형자산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 외부구입 :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입  
(1년 이상 임차사용의 경우 임차료를 포함. 단, 구입비용이 50만원 이하는 제외)

## ▣ 무형자산명세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취득원가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당기상각액	기말잔액	비 고
영 업 권							
산 업 재 산 권							
차 지 권							
개 발 비							
계							

②항 2)의 ② 무형자산 당기취득액

## 위탁업무 (아웃소싱)

### 1) 개념과 형태

- ① 아웃소싱이란 기업이나 기관이 비용절감,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핵심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외부업체들에게 민간위탁 또는 외부용역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
  - 컴퓨터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에 자사 정보 시스템의 운용 관리, 보수 유지 등을 위탁하여 기기 구입비, 유지비, 기술자 등의 인건비 절약
- ② 형태 : BPO를 포함하여 IT, 시스템통합(SI), 금융, 의료, 생산, 연구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

		국내업체, 1990년이전	국외업체, 1990년대이후
부분별	생산	외주, OEM	ODM, EMS
	R&D, 디자인	단순기술, 일부작업	첨단기술, 디자인부문
	IT	유지보수, 개발위탁	정보처리부문 위탁
	비즈니스서비스	단순업무, 단위업무	포괄적 프로세스(BPO), BTO
내용별	목적	인건비 등 비용절감	핵심 역량에 집중
	범위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	해당 프로세스 전체
	관계	단기적, 거래적	장기적, 동반자적
	지역	국내	국외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생산
-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제조업자 설계생산
-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 전자제품 위탁생산서비스
-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 사업프로세스 아웃소싱
  - 회계, 인사(OBR), 의료기록 정리 등의 업무들을 아웃소싱하는 것
- BTO(Business Transformation Outsourcing) :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변화시키고 관리

## 2) 현황 및 사례

### (1) 현황

- 국외(미국, EU등 약 75%)
  - 구미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증가
  - 미국에서는 글로벌 아웃소싱이 자국내 일자리 감소 이유로 비판 제기
  - 일본에서는 아웃소싱 확산에 따른 기술유출이 이슈화
- 국내(약 55%, 1조3천억원의 시장규모, 10%이상의 성장률)
  - 비용절감 차원에서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음
  - 외환위기 이후 간접부문을 분사해서 외부위탁 한 것이 확산의 계기

### (2) 아웃소싱 활용현황

조사기관	활용비율	활용분야	활용목적	조사대상
대한상공회의소 (1998)	54.3%	시설관리경비, IT, 생산, 물류	비용절감, 서비스향상, 핵심역량집중	상장기업 368개
아웃소싱코리아 (2000)	58.7%	시설관리경비, 생산, 물류, 총무/회계	비용절감, 핵심역량집중, 생산성향상	매출500억이상 750개
산업자원부 (2002)	57.3%	IT, 생산, 경비/보안, 시설관리청소	비용절감, 서비스향상, 고용부담경감	상장기업 380개
아웃소싱기업협회 (2003)	68.9%	청소/경비, 인재파견, 시설관리, 물류대행	비용절감, 핵심역량집중, 조직간소화	202개
대한상공회의소 (2005)	43.8%	생산(39.9), 시설관리(17.7), 물류(15.2)	효율성증대(35.6), 핵심역량집중(28.1), 비용절감(17.1)	외부감사 제조업체 500개

### (3) 사례

- 레인콤 : 디자인 아웃소싱으로 제품차별화
- 휴맥스 : 생산아웃소싱으로 R&D 핵심역량에 집중
- 미샤 : 외부생산으로 초저가 화장품시장 공략
- 광주전자 : OEM을 ODM으로 전환하여 성장전기 마련
- 태평양 : 정보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아웃소싱
- 제일제당(인사 및 총무), 해태제과(MRO구매), 현대기아 자동차(부품물류), 알리안츠생명(채용부문), 신한생명(재무정보, 조사부분), 한국통신(CRM) 등

## 연구개발비

### 1) 연구개발비의 정의

- 연구개발비란 연구비와 개발비를 합하여 말하는 것
  - 연구 :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
  - 개발 :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

#### (1)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예

- 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②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의 응용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
- ③ 제품 등의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 ④ 신제품 등으로 선택가능한 안들을 형성, 설계, 평가 및 선정하는 활동

#### (2)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예

- ① 생산 또는 사용전의 원형(Prototypes)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②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③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Pilot Plant)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④ 신제품 등으로 최종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⑤ 업무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 2)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 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의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발생즉시 처리
- ②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의 창설이나 개발활동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건설, 구입, 리스(금융리스)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유형자산 과목으로 기재
- ③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경비(감가상각비 포함)는 연구비(당기비용)로 처리

- ④ 개발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개발비로 계상
- ⑤ 개발활동과 일상적인 제조활동이 혼합되어 수행되는 경우
  - 개발활동이 사전에 승인된 특정 개발 과제하에 수행되고, 개발비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로 계상

## e-비즈니스

- e-비즈니스 : 정보기술에 의해 형성된 디지털 환경하에서 고객, 협력업체 등과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 전자상거래는 거래 행위에 초점을 두고 경제현상을 파악하려는 것
  - e-비지니스는 거래 행위는 물론 비즈니스에 참가하는 주체간의 관계와 정보의 흐름을 포함하는 것

## ■ e-비즈니스 시스템

### ①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의 자원관리)

-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사정보·재무정보·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시스템

### ② LMS (Learning Management Solution, 온라인교육 운영관리 시스템)

- 컴퓨터 온라인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학습관리 시스템으로 기업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은 물론 전사적 자원관리, 지식관리, 인사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솔루션으로 사용되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사내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 ③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 시스템)

- 조직 내의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정보시스템

### ④ HRMS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인적자원관리시스템)

- 기업의 장래 인적자원의 수요를 예측하여 기업전략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채용·선발·배치부터 조직설계·개발, 교육·훈련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인사관리 틀을 넘어선 포괄적인 개념



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분석 및 관리**)

- 기업이 고객의 성향이나 취향을 파악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위해 활용되는 시스템

⑥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 불확실성이 큰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공급망을 관리하는 시스템(기업의 공급사슬 최적화)

⑦ B2BI (Business to Business Intergration, **B2B통합**)

- B2B통합이란 기업 내 서로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전사적 애플리케이션통합시스템(EAI)을 기업간으로 확장한 것으로 EAI가 단일 기업에 국한 돼 있다면 B2BI는 B2B 거래시 발생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E-마켓플레이스간, E-마켓플레이스와 E-마켓플레이스간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기능

⑧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전사적 애플리케이션 통합**)

- 기업이 여러 응용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근간을 이루는 트랜잭션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기업이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EAI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접근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⑨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공정자동화**)

- 생산라인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업지시(제조주문)나 작업장의 정보 상태를 관리하고,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⑩ SEM (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 **전략적 기업경영 시스템**)

- 주요 경영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이에 따른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⑪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

- 기업 전체의 위험요소의 관리를 통해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⑫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업무 프로세스 관리**)

-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간소화하고 비정형화된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 프랜차이즈

### 1) 프랜차이즈의 정의

- 프랜차이즈란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메이커 또는 판매업자가 체인본부를 구성, 독립소매점을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그들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
  - 판매 상품의 종류, 점포, 광고 및 기타 영업에 관련되는 것을 직영점이 관리하고 가맹점에 경영지도 및 판촉지원을 제공
  - 프랜차이즈는 계약에 의해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의 물품을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이며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 또는 돈을 통해 물품을 유통시키는 사업 전략

### 2) 프랜차이즈의 어원

- Franchising이란 Franchisor(프랜차이즈 회사)가 Franchisee(프랜차이즈를 사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회사의 이름, 상호, 영업방법 등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파는 시스템
  - Franchise : Franchisee가 Franchisor로부터 받게 되는 권리와 면허 자격

### 3) 프랜차이즈 분류

#### (1) 프랜차이즈 형태에 의한 분류

- Direct Unit 프랜차이즈
  - 일정기간, 일정지역 내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하나의 영업 점포에 한해 영업권을 부여한다. 동일 지역 내에서 프랜차이즈 회사가 운영하는 상점이나 다른 프랜차이즈를 허가하지 않는 독점구역을 가질 수 있음
- Area 프랜차이즈
  - 일정기간, 일정지역 내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여러 개의 영업 점포에 대한 영업권을 부여한다. 프랜차이즈 회사와 개발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불한 후 일정 지역의 개발에 대한 권리를 사게 된다. 만일 프랜차이지가 약정대로 개발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여 프랜차이즈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음



- Master 프랜차이즈
  - 일정기간, 일정지역 내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프랜차이즈 회사의 권리를 부여하여 이 권리를 부여받은 서브프랜차이즈자가 다시 프랜차이즈 권리를 서브프랜차이즈에게 부여하는 형태로서 서브프랜차이즈는 서브프랜차이즈에게 교육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회사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 (2) 프랜차이즈 체인 형태에 따른 분류

- 단일 자본에 의한 직영점(Regular Chain)
  - 단일자본, 동일 경영자에 의해 창설된 체인점을 말한다. 이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자기자본 전액을 출자하여 체인형태를 확장해 가는 방식을 말하며 동일 경영자와 단일 자본에 의한 다점포화를 의미함
- 임의적 체인점(Voluntary chain)
  - 독립자본에 의한 다수의 소매점이 모여서 각자가 갖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체인본사에 위탁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체인 본사가 도매업자라 할지라도 조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소매업자이며 전 소매점이 체인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소매업자간의 수평적 관계가 중시됨
- 프랜차이즈 체인
  - 체인 본사와 각 가맹점이 모든 독립 자본에 의한 사업자이지만 운영의 주체는 체인 본사에 있으며 가맹점은 체인경영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다. 가맹점과의 수평적 연결보다는 체인본사와 가맹점간의 수직적 관계가 중시됨

## 전략적 제휴

### 1) 전략적 제휴의 정의

-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란 2개 이상의 기업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영전략
- 전략적 제휴는 기업활동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진 다국적기업의 거대한 중심에 국제하청기업들이 종속되어 있는 종래의 국제분업과는 전혀 다른 것
- 전략적 제휴는 이미 80년대부터 선진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실시
- 전략적 제휴는 일정한 수명주기를 갖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단위가 기업내부에 장기적으로 고정화되는 매수, 합병과도 구분
  - 성공적인 제휴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매수, 합병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음

### 2) 전략적 제휴의 범위

- 전략적 제휴의 범위도 과거에는 기술이전이나 신 시장 개척 등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공동연구, 글로벌시장에의 진출, 신사업 기회 창출, 판매제휴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조달, 개발, 생산, 판매 등 전 경영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 수직적 제휴보다는 대등한 실력을 갖춘 기업 간의 수평적 제휴가 위주가 되며, 첨단산업에서는 복합적인 기술의 필요로 인해 다양한 업종에 속한 기업 간의 제휴가 불가피하게 전개되고 있다.
  - 전략적 제휴관계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이질적인 집단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합체가 형성될 전망이다. 비단 기업체뿐 아니라 대학교, 의료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자선단체, 특수이익집단, 연구기관, 기술컨소시엄 등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제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 국내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가 생산 및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국외기업과의 제휴는 자본 및 R&D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기업이 아직도 외국 업체로부터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독자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스톡옵션

### 1)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정의

- 주식매입선택권이란 법인의 창설과 경영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관련규정 : 상법 제 340조의 3
- 대상 제외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임직원의 대상에서 제외됨

### 2) 부여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발행 교부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 교부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시가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

### 3) 스톡옵션의 종류

- 고정부 스톡옵션
  -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 행사가격, 부여수량 등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
  -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의 대부분
- 할증 스톡옵션
  - 부여시점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주가가 상승해야 가치가 발생하는 옵션
- 성과연동 스톡옵션
  - 경영자의 성과에 연동하여 행사가격,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이 조정되는 스톡옵션

-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행사수량, 행사시기 등이 기준지수 또는 기준지표에 일정한 방식으로 연동되어 매년 재설정되는 스톡옵션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스톡옵션
- 경영지표연동 스톡옵션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행사수량, 행사시기 등이 경영자의 성과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 일정한 방식으로 연동되어 결정되는 스톡옵션

## 우리사주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인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임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법인이 기업공개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으며,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하게 됨

### 1)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기업이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설정해 자사주나 기타 주식에 투자한 뒤 이익을 분배하는 제도
  -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기업과 종업원이 같이 주식을 산다는 점에서 종업원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우리사주제도와 다르다.
-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의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종업원들에게 자사주 취득 기회를 늘려 주기 위해 200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 2) ESOP에 대한 출연방식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하는 방법
  - 상장법인 및 코스닥 법인의 경우 자사주를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및 금액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 절차가 필요
- 기업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법
  - 자금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
- 종업원이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법
  - 종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우선 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ESOP에 자금 출연
- 우리사주신탁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 영국식과 미국식으로 구분되는데, 미국식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 운영실적에 따라 나눠주고, 영국식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 형태로 나눠줌 (한국은 영국식을 따름)

## 3) 우리사주 조합제도

-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자사주(유상증자 시 발행주식의 20%)등을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 후 인출하는 제도

## 4. 재무제표와 조사항목 대비표

### ■ 매출액명세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합 계	특수관계자 매 출 액	할부매출액
	국내매출	수 출			
I. 상 품 매 출 액 1. 상 품 총 매 출 액 2. 매 출 에 누 리 와 환 입 3. 매 출 할 인					
II. 제 품 매 출 액 1. 제 품 총 매 출 액 2. 매 출 에 누 리 와 환 입 3. 매 출 할 인					
III. 반 제 품 매 출 액 1. 반 제 품 매 출 액 2. 부 산 품 매 출 액 3. 작 업 폐 물 매 출 액					
IV. 용 역 매 출 액 1. × × 매 출 액 2. × × 매 출 액					
V. . . . .					
VI. 당 기 매 출 액 합 계					

④항 1)의  
직접수출액의 거래액

④항 1)의 매출액의  
관계회사 거래액

부  
록



▣ **매출원가명세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합 계
	국내매출	수 출	
I. 기 초 재 고 액 1. 상 품 2. 제 품 3. 반 제 품 4. . . . .			
II. 당 기 상 품 매 입 액 1. 일 반 상 품 순 매 입 액 가. 일 반 상 품 총 매 입 액 나. 일반상품매입에누리환출 다. 매 입 할 인 2. 특 수 관 계 자 매 입 액 3. 매 입 비 용 4. . . . .			
III. 당 기 제 품 제 조 원 가			
IV. 매 입 (또 는 제 조) 이 외 의 상 품 (또 는 제 품) 증 가 액			
V. 기 말 재 고 액 1. 상 품 2. 제 품 3. 반 제 품 4. . . . .			
VI. 매출이외의상품(또는 제품)감소액			
VII. 용 역 원 가 1. × × 비 2. × × 비			
V. . . . .			
VI. 당 기 매 출 액 합 계			

④항 1)의 구입액의 거래액

④항 1)의 구입액 관계회사 거래액



■ 감사보고서상의 투자주식의 내용

(1)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지분율 현황 등

(단위 : 천원)

회 사 명	당 기 말					비 고
	보유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주)운수레스	67,000주	27.92%	335,000	3,856,867	3,856,867	2005. 03
신영스타킹(주)	190,400주	23.80%	952,000	2,609,127	2,609,127	2005. 06
신영섬유(주)	59,800주	29.90%	299,000	5,234,567	5,234,567	2005. 06
합 계	317,200주		1,586,000	11,700,561	11,700,561	

③항 1)의 관계회사명

③항 1)의 지분율

③항 1)의 투자금액

■ 감사보고서상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용

(1) 당기와 전기중 주요 특수관계회사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 사 명	매 출		매 입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주)운수레스	151,213	197,892	3,691,086	4,178,864
신영스타킹(주)	4,200	-	2,309,639	4,027,778
신영섬유(주)	371,962	375,442	7,817,946	8,374,559
(주)삼 영	-	-	-	13,568
합 계	527,375	573,334	13,818,671	16,594,769

④항 ①매출액의 관계회사 거래액

④항 ②구입액의 관계회사 거래액



## 5.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

(2011. 1월 현재)

작성방법	작성주기	통 계 명 칭	
조사통계(42종)			
전수조사 (13종)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총조사</li> <li>경제총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총조사</li> <li>농림어업총조사</li> </ul>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인력및예산조사</li> </ul>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업·제조업조사</li> <li>농어업법인조사</li> <li>건설업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사업체조사</li> <li>기업활동조사</li> </ul>
	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류양식동향조사</li> </ul>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동향조사</li> </ul>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동향조사</li> </ul>	
표본조사 (29종)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시간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li> </ul>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조사</li> <li>도소매업조사</li> <li>농가경제조사</li> <li>어가경제조사</li> <li>어업조사</li> <li>사교육비조사</li> <li>농업면적조사</li> <li>가계금융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수업조사</li> <li>서비스업조사</li> <li>농축산물생산비조사</li> <li>농업조사</li> <li>양곡소비량조사</li> <li>농작물생산조사</li> <li>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li> </ul>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동향조사</li> <li>지역별고용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li> </ul>
가공통계 (8종)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래인구추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래가구추계</li> </ul>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소득</li> <li>생명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원인통계</li> <li>국가자산통계</li> </ul>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인구이동통계</li> </ul>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종합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비투자지수</li> </ul>
보고통계 (2종)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인구이동통계</li> </ul>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인구이동통계</li> </ul>	

※ 가계금융조사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공동작성

## ♣ 산업(업종)분류표 ♣

대분류	산업종분류	사업내용		
제조업	10	식품	도축, 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11	음료	알콜음료, 비알콜 음료 및 얼음제조	
	12	담배	담배	
	13	섬유 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방직 및 가공사 제조, 직물직조업, 편조업, 섬유 염색 및 가공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봉제의복,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편조의복, 의복 액세서리 제조(스타킹, 양말, 모자)	
	15	가죽, 가방 및 신발	가죽, 가방, 지갑, 신발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제재 및 목재 가공, 나무제품, 코르크 및 조물 제품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 골판지, 종이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 및 인쇄관련,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코크스 및 연탄, 석유정제품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기초화학물질,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타이어,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23	비금속 광물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도자기 및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석제품, 아스팔트	
	24	제철 금속	제철 및 제강, 비철금속 제조, 금속주조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구조용 금속제품(금속문), 탱크 및 증기 발생기, 금속단조, 도금, 무기 및 총포탄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방송·통신 장비, 영상·음향 기기	
	27	의료기기,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기기, 광학기기(안경, 사진기), 시계	
	28	전기장비	발전기, 발전기, 전기변환장치,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절연선 및 케이블, 전구, 조명, 가정용기기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일반목적용 기계, 가공공작기계, 특수목적용 기계, 주형 및 금형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 트레일러, 자동차 부품	
	31	기타 운송장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모터사이클, 자전거, 전동용 차량	
	32	가구	가구, 매트리스 및 침대	
	33	기타 제품	귀금속, 장신구, 악기, 운동용품,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간판, 사무용품, 가발, 모형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	자동차 판매, 타이어,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 오토바이 및 부품 판매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중개업, 각종 도매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각종 소매업
		55	숙박업	호텔, 여관, 콘도, 수련원, 기타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
	서비스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처리업, 폐수 처리업,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68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운송장비 임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 무형재산권 임대	
70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	
71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관련 서비스, 광고업, 시장조사,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학, 전문 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서비스,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여행사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 탐정 및 조사서비스, 사무지원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	
95	수리업	기계 및 장비 수리,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 가전제품 수리,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 육탕 및 유사서비스,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 예식장업, 개인간병		
기 타	01	농업	50	수상운송업
	02	임업	51	항공운송업
	03	어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58	출판업
	06	금속 광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7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60	방송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61	통신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6	수도사업	63	정보서비스업
	41	종합건설업?	64	금융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65	보험 및 연금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